

2009년 정기국회 보고자료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2009. 9

본 연차보고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특수교육에 관한 주요시책과 그 추진내용을 수록한 것이며, 2009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임



교육과학기술부

차 례

I. 특수교육의 개요	1
1. 특수교육의 정의	1
2. 특수교육 관련 법령	1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1
4. 특수교육의 현황	8
5. 특수교육의 변화 추이	11
II. 2009년 특수교육 주요 현황	13
1. 특수교육대상학생 현황	13
2. 특수학교 현황	16
3. 일반학교 특수교육 현황	19
4. 순회교육 및 병원학교 현황	20
5. 초등학교 취학유예 장애학생 현황	20
6. 특수교육대상학생 고등학교 졸업자 진로상황	21
7. 시·도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현황	22
8. 시·도별 특수학급 설치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평균 설치비율	23
III. 2009년도 추진 실적	24
1.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체제 구축	24
1) 특수교육기관 현황	24

(1) 특수학교 신설을 통한 특수교육 기회 확대	24
(2) 특수학급 증설을 통한 특수교육 기회 확대	28
2)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33
(1) 특수학교 학생 현황	33
(2) 특수학급 학생 현황	36
(3) 일반학교 배치 학생 현황	37
(4) 순회교육 학생 현황	37
(5) 병원학교 지원 현황	39
3) 장애영·유아 무상교육 지원	41
(1)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41
(2) 장애유아 무상교육 지원	43
4) 장애성인 고등교육 및 성인교육 지원	45
(1)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45
(2) 장애성인교육 지원	49
5) 특수교육 실태조사	51
(1) 특수교육 실태조사	51
(2)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 및 평가	54
2. 학령기 아동의 통합교육 내실화	56
1)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56
2) 일반교육교원의 통합교육 책무성 강화	57
(1) 통합교육 현황	57
(2) 일반교육교원 통합교육 관련 연수	59
(3) 통합교육 시범학교 및 통합교육 연구회 운영	61
3) 특수교육교원의 통합교육 책무성 강화	63
(1) 특수교육 담당교원 양성	63

(2) 특수교육 담당교원 현직연수	67
(3) 장애학생 학력평가제 및 평가조정제 실시	70
(4) 장애인식 개선	77
(5) 편의시설 설치 현황	79
3. 특수교육 지원 강화	84
1)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84
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86
3) 장애아 조기발견을 위한 진단배치 체계 마련	93
4) 종일반 및 방과후 학교 운영	101
5) 장애인 직업교육 지원	104
6) 특수교육 행·재정 지원	109
4. 국립특수교육원의 특수교육 지원 사업 실적	117
1) 연구 사업	118
2) 연수 사업	120
3) 특수교육정보화 사업	123
부 록 I : 시·도 특수교육 운영계획	127
부 록 II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319

표 차 례

〈표 1·1〉 특수교육 관련 법령	2
〈표 1·2〉 특수학교 현황	9
〈표 1·3〉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현황	9
〈표 1·4〉 특수교육대상자의 일반학급 배치 현황	10
〈표 1·5〉 순회교육 현황	10
〈표 1·6〉 연도별 특수교육 현황 추이	11
〈표 3·1〉 연도별 특수학교 수	25
〈표 3·2〉 신설 특수학교 현황	25
〈표 3·3〉 설립별·장애영역별 특수학교 수	25
〈표 3·4〉 시·도별,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수	26
〈표 3·5〉 시·도별, 설립별 특수학교 수	27
〈표 3·6〉 연도별 특수학급 수	28
〈표 3·7〉 시·도별, 학교과정별 일반학교 대비 특수학급 설치율	29
〈표 3·8〉 시·도별, 학교과정별 특수학급 수	30
〈표 3·9〉 시·도별, 운영형태별 특수학급 수	31
〈표 3·10〉 시·도별, 학교과정별 특수학교(급)의 학급당 학생 정·현원	32
〈표 3·11〉 연도별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33
〈표 3·12〉 시·도별,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34
〈표 3·13〉 설립별·장애영역별 특수학교 학생 수	35
〈표 3·14〉 시·도별, 설립별 특수학교 학생 수	35
〈표 3·15〉 연도별 특수학급 학생 수	36
〈표 3·16〉 시·도별, 학교과정별 특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36
〈표 3·17〉 시·도별, 학교과정별 일반학급 전일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37

<표 3·18> 특수학교 순회교육 대상자 수	38
<표 3·19> 특수학급 순회교육 대상자 수	38
<표 3·20> 병원학교 현황	39
<표 3·21> 병원학교별 학생 및 운영 현황	40
<표 3·22> 화상강의 기관 현황	41
<표 3·23> 시·도별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현황	42
<표 3·24> 유아특수교육기관 현황	43
<표 3·25> 유아특수교육기관 학생 수	44
<표 3·26> 공사립 일반유치원 특수교육 대상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현황	44
<표 3·27> 2009년도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 진학률	46
<표 3·28> 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대학 입학생 수	47
<표 3·29>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특수교육대상자 재학 및 특별전형 현황	48
<표 3·30> 대학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 현황	48
<표 3·31> 장애성인교육 지원 현황	50
<표 3·32> 특수교육 실태조사 대상자 현황	52
<표 3·33> 특수교육요구학생 추정 수	52
<표 3·34>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평가 영역	54
<표 3·35>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 지원	56
<표 3·36> 시·도별 통합학급 담당교사 현황	58
<표 3·37> 시·도별 통합학급 담당교사 승진 가산점 부여 현황	59
<표 3·38> 일반교원의 특수교육 연수과정 이수 인원	60
<표 3·39> 시·도별 통합교육 시범학교 운영현황	61
<표 3·40> 시·도별 일반교사 통합교육 연구회 운영 현황	62
<표 3·41> 특수교육 교원 양성대학 및 입학정원	64
<표 3·42> 특수교육대학원 설치 대학 현황	66
<표 3·43> 특수교육 관련 전공 설치 교육대학원 현황	66
<표 3·44> 특수교육교원 연수 현황	68

<표 3·45> 특수교육교원 연구회 운영 현황	69
<표 3·46> 시각장애학생 학력평가 실시 현황	71
<표 3·47> 청각장애학생 학력평가 실시 현황	72
<표 3·48> 지체장애학생 학력평가 실시 현황	73
<표 3·49> 정신지체학생 학력평가 실시 현황	74
<표 3·50> 정서장애학생 학력평가 실시 현황	75
<표 3·51> 기타 장애학생 학력평가 실시 현황	76
<표 3·52> 시·도별 일반학교 장애이해 교육 실시율	78
<표 3·53> 특수학급 설치유치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0
<표 3·54> 특수학급 설치 초,중,고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1
<표 3·55> 특수학급 미설치 초,중,고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2
<표 3·56> 특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3
<표 3·57>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원 현황	85
<표 3·58> 치료지원 현황	87
<표 3·59> 치료지원 인력 및 예산	88
<표 3·60> 시·도별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수	89
<표 3·61> 시·도별 특수학교 학생 통학버스 이용비율	90
<표 3·62> 시·도별 특수교육대상학생 급식비 지원 현황	91
<표 3·63> 시·도별 특수교육대상학생 교통비 지원 현황	92
<표 3·64>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수	95
<표 3·65> 시·도별 일반학생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비율	96
<표 3·66> 시·도별 초등학교 취학유예자 현황	97
<표 3·67> 시·도별 장애로 인한 취학유예자 연령 분포	98
<표 3·68>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장애인 등록 현황	99
<표 3·69>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100
<표 3·70> 유아특수교육기관 종일반 운영 및 특수교육기관 방과후 학교 현황 ..	102
<표 3·71> 특수교육대상학생 방학중 프로그램 운영 현황	103

<표 3·72> 2009년 특수학교 학교기업형 직업훈련실 설치 사업 학교현황	104
<표 3·73> 2009년도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생 취업현황	105
<표 3·74> 2009년도 고등학교 특수학급 졸업생 취업현황	106
<표 3·75> 2009년도 고등학교 일반학급 특수교육대상자 취업현황	107
<표 3·76> 특수학교 전공과 설치 현황	108
<표 3·77> 2009년도 전공과 이수자 취업현황	108
<표 3·78> 시도별 특수교육 담당 전문직 현황	110
<표 3·79> 시도별 특수교육 담당교사 자격 소지 현황	111
<표 3·80> 시도별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	112
<표 3·81> 특수교육 총예산	113
<표 3·82> 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비	113
<표 3·83> 연도별 특수교육 예산 비율	114
<표 3·84> 시도별 사립특수학교 지원 비율	115
<표 3·85> 특수학급 학급당 연간 운영비 지원	116
<표 3·86> 2009년도 국립특수교육원 연구사업	119
<표 3·87> 2009년도 특수교육 학술세미나 개최 현황	120
<표 3·88> 2009년도 국립특수교육원 집합연수 실적	121
<표 3·89> 2009년도 국립특수교육원 원격연수 실적	122
<표 3·90> 2008년도 전국 특수교육 정보화대회 실적	125

I. 특수교육의 개요

1. 특수교육의 정의

-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호)
- “특수교육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보조인력지원·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2호)

2. 특수교육 관련 법령

- 특수교육은 헌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시행령,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특수교육담당교원및교육전문직인사관리기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 등이 정한 규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法律 第8483號, 2007. 5. 25제정, 2008.5.26 시행)

□ 제정 배경

-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53호로 제정· 공포된 특수교육진흥법은 당시 우리나라 장애인 교육을 공적으로 보장하기 시작하였고, 전국 시·도에 공립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이 설치되는 등 특수교육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법적 근거가 됨

- 지금까지 9차례에 걸친 개정이 이루어졌고, 그 중 1994년 전면 개정에서는 통합교육 및 개별화 교육 등 새로운 교육사조의 도입, 장애학생의 적절한 선정·배치 등 절차적 권리강화를 위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도입 등 획기적인 조치를 포함함

<표 1·1> 특수교육 관련 법령

법 령	관련 조항
헌법	제31조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제4조(교육의 기회 균등), 제8조(의무교육), 제18조(특수교육)
유아교육법	제15조(특수학교 등)
유아교육법시행령	제25조(특수학교의 교직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제21조(교원의 자격), 제55조(특수학교), 제56조(전공과의 설치), 제57조(특수학급), 제58조(학력의 인정), 제59조(통합교육)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0조(특수학교의 교직원), 제43조(교과), 제45조(수업일수), 제57조(분교장), 제58조(국·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시행령/시행규칙	전체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전체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 등에 대한 법률	제2절 교육

- 현장의 요구 및 사회변화, 특수교육 동향을 반영하여 내실 있는 특수교육정책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됨
 - 특수교육진흥법은 초·중등교육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장애 영·유아 및 장애 성인을 위한 교육지원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의 제시가 부족하여 법의 실효성 담보에 한계가 있음
- 최순영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특수교육 관련 의원안 8건과 정부에서 제출한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총 9건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마련되어 공포('07.5.25)됨으로써 '08년 5월 26일부터 시행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교육기본법」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 연한 확대

의무교육이란 교육의 기회균등 사상에 입각하여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필수적인 공통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에 대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의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법 시행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유치원 과정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교육과 고등학교 이후의 전공과 과정은 무상교육을 받게 된다.

의무교육 실시 연한의 확대는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의 수요 파악, 학급 증설, 교원 확보 등 교육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므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2010년에 만 5세 이상 장애유아와 고등학교 과정, 2011년 만 4세 이상, 그리고 2012년부터는 만 3세 이상의 모든 장애유아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된다. 다만, 현재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유아 중 교육기관보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유아가 더 많으므로 장애유아의 취학 편의를 위해 일정한 교육적 요건을 갖춘 보육시설 이용을 의무교육 이행으로 간주하도록 하였다.

유치원 과정의 장애유아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게 된 것은 장애 발견 즉시 조기교육을 제공하여 제2차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경감 효과를 증진시키며, 부모의 장애이해 부족으로 인한 자녀 취학 기피 현상을 방지하고자 장애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해 자녀의 취학 의무를 부과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장애유아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여 현재 의무교육으로 실시하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수준으로 교육여건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유치원 과정의 교육이 의무교육 연한에 포함되었다. 마찬가지로 중학교 과정을 마친 특수교육대상자들에 대해서도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의무화하여 독립된 성인생활을 영

위하기 위한 준비를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이들의 사회통합을 촉진시키고자 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 장애의 조기발견 체제 구축 및 장애영아의 무상교육

그동안 「특수교육진흥법」에는 장애의 조기발견이나 조기교육에 관한 절차 및 권리 규정이 없어 장애를 발견하는 시기가 늦었고, 장애를 발견하더라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무상보육의 혜택만을 받을 수 있어서 장애영유아를 둔 가정에서는 주로 사교육에 의존해야 했고 그에 따른 가계 부담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법에서는 만 3세 미만 장애영아에 대해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무상의 선별검사 실시 또는 영유아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영아의 장애교정과 경감, 제2차 장애의 예방 및 발달 촉진은 물론 장애자녀를 둔 가정의 가계 부담을 경감시키고 향후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및 사회통합의 촉진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청각장애 등 장애를 발견하고도 만 3세가 되지 않아 유치원 입학에 대기해야 했는데, 이제부터는 연령에 상관없이 특수교육 대상으로 선정되면 특수학교나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가정에서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다.

○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법적 근거 마련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은 특수교육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제2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03-’07)」의 추진과제로 선정되어 그동안 정책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시설 확보 및 전담인력 배치 등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지역 사회 중심으로 실질적인 특수교육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새 법에서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하급교육행정기관별로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진단·평가,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두도록 하고, 업무를 전담하는 특수교육 분야의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하였으며, 하나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 2개소 이상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된 시·군·구교육청 180개 중 관할지역 내 특수학급수가 20개 이하인 지역교육청은 89개(49%)이다. 이처럼 지역마다 규모가 매우 상이하므로 모든 센터의 설치 규모나 배치할 전문인력의 수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시·도별로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센터의 업무는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수행하거나, 장애인복지관,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수행하는 방안 또는 부모의 희망에 따라 바우처제도를 활용하는 등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통합교육의 강화

최근 5년간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환경별 배치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학교에 배치되어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일반학교에 배치되어 통합교육을 받는 학생이 2005년에는 전체 특수교육대상자의 59.8%이었던 것이, 2006년도 62.8%, 2007년도 65.2%, 2008년도 67.3%, 2009년도 68.3%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위해 일반학교 내에 설치하는 특수학급도 최근 5년간 연평균 500여 학급씩 지속적으로 증설되어 왔다.

하지만, 아직도 통합교육 현장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과정 조정, 학습보조기기 지원, 보조인력 지원, 교원의 장애이해 등이 미흡하여 차별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새 법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를 가능하면 통합된 교육환경에 배치하도록 하면서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하였다. 물론 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자가 재학하고 있는 일반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조정, 보조인력 지원, 학습보조기기 지원, 교원연수 등에 관한 통합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통합교육의 성공적인 실행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준비를 하였다.

특수학급 미설치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특수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교사가 방문하여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특수학교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왔다면, 이제부터는 특수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급 미설치 일반학교 등 어떤 교육 환경에 배치되더라도 개별 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 진로 및 직업교육의 강화

특수교육대상자가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 등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직업재활훈련 및 자립생활훈련을 실시하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강화하였다.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직접적으로 실시하는데 필요한 별도의 교실 외에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임상실습을 위한 직업훈련실을 설치하고 인력과 경비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초·중등교육법」제56조에 따라 고등학교과정을 설치한 특수학교에 전문기술교육을 하기 위해 수업연한 1년 이상인 전공과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제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특성·능력·장애유형 또는 요구 등에 맞추어 직업재활훈련 뿐 아니라 자립생활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전공과를 운영할 수 있고, 특수학급에도 전공과를 설치할 수 있다.

○ 학급 설치 및 교사 배치 기준의 상향조정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특수교육대상학생 1인 이상 12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할 수 있었다. 새 법에서는 유·초·중·고별로 각각 4명·6명·6명·7명을 기준으로 1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교육대상자 개개인의 특성과 능력에 따른 개별화된 교육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까지 특수교육 담당교사의 배치기준은 특수학교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어서 특수학급 또는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교원수급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새 법에서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의 총정원을 학생 4명당 1인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시·도별 교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단위학교·학교급별 교사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도시와 농촌·산촌·어촌 교육의 균형발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배치기준의 4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배치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특수학교 뿐만 아니라,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 가정 등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기관이나 장소에 상관없이 특수교육 담당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특수교육을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제정과정에서 치료교육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2008년 개정 특수학교교육과정의 순차적 적용을 고려하여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2009년부터 연차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2009년에는 유치원과정,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특수교육대상자에게, 2010년에는 초등학교 3,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2011년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2012년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2013년에는 고등학교 3학년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제공된다.

그동안 치료교육활동은 언어치료, 청능훈련, 물리치료, 작업치료, 감각·운동·지각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 보행훈련, 일상생활훈련 등 8개 영역의 활동으로 나뉘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정해진 수업시간에 제공되어 왔다. 새 법에서는 치료교육활동 대신 치료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진단·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개개인의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학생별로 치료지원 내용이나 방법 등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물리치료, 작업치료를 비롯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것으로 결정되는 치료지원은 국가면허 혹은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소지 전문 치료사가 제공하게 된다.

치료지원 제공에 필요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시·도별로 인적 자원, 예산, 유관기관의 분포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제까지 제공해오던 치료교육활동 영역 중 전문치료사가 제공해야 하는 의료적 지원으로 볼 수는 없으나 특정한 장애유형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영역으로 인정되는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훈련 등도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로 규정하여 그것을 필요로 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강화

1995학년도부터 도입된 특수교육대상자 대학 특별전형제도 시행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장애학생들이 증가함에 따라 대학 장애학생의 실질적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법적기구 마련이 필요하였다.

대학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 지원을 총괄·담당하는 전담기구를 두어 장애로 인한 교육활동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장애인들의 사회진출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애인의 고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조항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교육책임자가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규정과 같다.

○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로 평생학습의 욕구가 증대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성인의 경우 학령기에 장애로 인해 교육 기회를 놓친 사례가 많으므로 장애성인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 근거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일반 평생교육시설에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만을 위한 별도의 시설로서 학교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반 평생교육시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설비 외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였다. 또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그 공공시설의 본래 이용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향후 교육분야의 상대적 소외계층인 장애인들의 평생학습 인프라를 구축함에 따라 장애인들의 교육기회가 확대되고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4. 특수교육의 현황

특수교육대상자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전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임(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2항)

- 2009년 4월 현재 전국 150개의 특수학교에서 23,606명의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음
- 특수학교에서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은 6,612명임
- 2008년도 특수학교 현황과 대비하면 통합교육 확대로 특수학교 학생수는 206명이 감소한 반면, 특수학교 수 1개교 증가, 특수학교 학급수는 149학급 증설, 교원수는 147명이 증원되었음

<표 1·2>

특수학교 현황

(2009. 4. 1 현재)

설립별	학 교 수	학 급 수	학 생 수	교 원 수
국 립	5	170	958	333
공 립	55	1,661	10,641	2,910
사 립	90	1,806	12,007	3,369
계	150	3,637	23,606	6,612

- 2009년 4월 현재 전국 5,324개의 유·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된 6,924개 특수학급에서 39,380명의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음
- 특수학급에서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은 7,128명임
- 2008년도 특수학급 현황과 대비하면 특수학급 설치교는 353개교 증가, 특수학급은 572개 학급 증설, 담당교사는 428명이 증원되었음

<표 1·3>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현황

(2009. 4. 1 현재)

과정별	학 교 수	학 급 수	학 생 수	교 사 수
유 치 원	181	206	720	210
초등학교	3,413	4,357	22,469	4,365
중 학 교	1,189	1,491	9,197	1,482
고등학교	541	870	6,994	986
재활복지	-	-	-	85
계	5,324	6,924	39,380	7,128

- 2009년 4월 현재 전국 5,704개 유·초·중·고등학교의 10,905개 일반학급에 12,006명의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배치되어 통합교육을 받고 있음

<표 1·4> 특수교육대상자의 일반학급 배치 현황

(2009. 4. 1 현재)

구 분	학 교 수	학 급 수	학 생 수
유 치 원	1,169	1,524	1,727
초등학교	2,198	4,024	4,295
중 학 교	1,227	2,339	2,568
고등학교	1,110	3,018	3,416
계	5,704	10,905	12,006

- 2009년도 4월 현재 가정·시설·병원·학교 등에 순회 또는 파견 형태로 실시하는 순회교육은 629학급 763명의 교사가 모두 3,404명의 특수교육대상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수학교에서 889명, 특수학급에서 2,515명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함

<표 1·5>

순회교육 현황

(2009. 4. 1 현재)

구 분	학 생 수					학급수	교사수
	가정	시설	병원	일반학교	계		
특수학교에서 순회·파견	373	442	74	-	889	198	207
특수학급에서 순회·파견·겸임	555	1,083	24	853	2,515	431	556
계	928	1,525	98	853	3,404	629	763

5. 특수교육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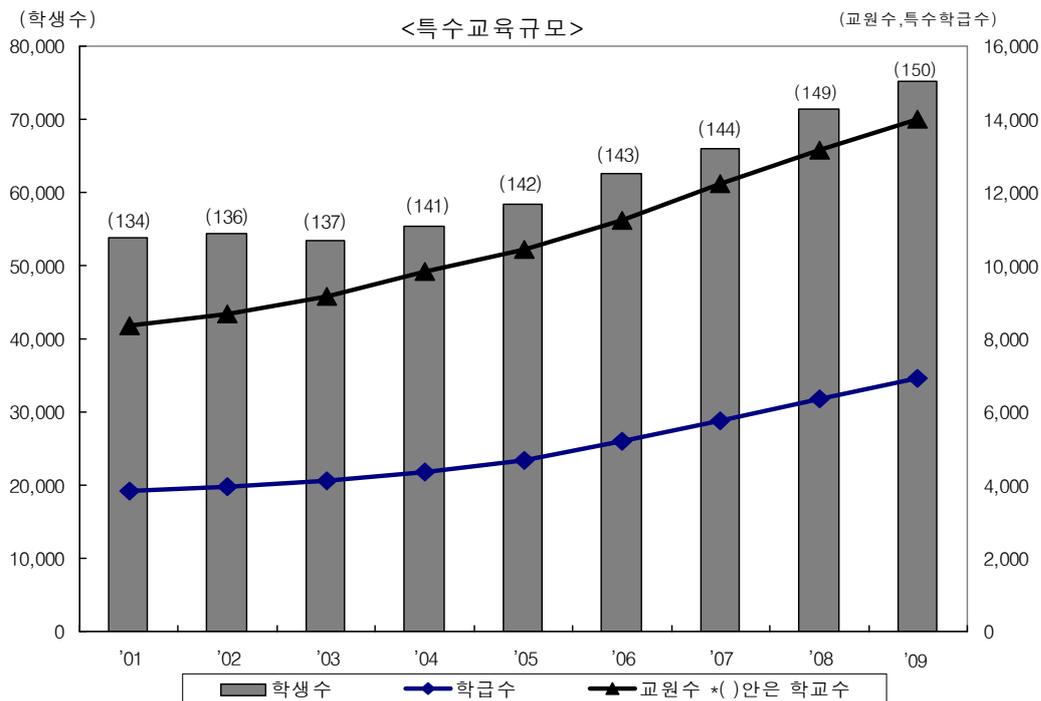
<표 1·6>

연도별 특수교육 현황 추이

(교, 학급, 명)

구분	'01	'02	'03	'04	'05	'06	'07	'08(A)	'09(B)	B-A
특수학교수	134	136	137	141	142	143	144	149	150	1
특수학급수	3,846	3,953	4,102	4,366	4,697	5,204	5,753	6,352	6,924	572
학생수	계	53,896	54,470	53,404	55,374	58,362	62,538	65,940	71,484	3,703
	유치원	1,765	1,809	1,932	2,677	3,057	3,243	3,125	3,236	355
	초등학교	32,178	32,006	30,838	30,329	31,064	32,263	32,752	33,974	61
	중학교	11,086	11,356	11,055	11,326	12,493	13,972	15,267	16,833	1,113
고등학교	8,867	9,299	9,579	11,042	11,748	13,060	14,796	15,686	19,615	3,929
교원수	8,376	8,695	9,175	9,846	10,429	11,259	12,249	13,165	13,997	832

※ 특수교육대상학생 : 장애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 통계 의미 분석

○ 특수학교수 및 특수학급수 변화 추이

- 최근 장애학생의 통합교육 확산으로 특수학교 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으나, 특수학급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며 최근 5년간 연평균 511학급이 증가함
-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특수학교의 학생은 장애정도가 심한 중도·중복장애학생이 많아지는 경향을 나타냄
 - ※ 특수학교 : ('08) 149개교 → ('09) 150개교, 1개교 신설
 - ※ 특수학급 : ('08) 6,352학급 → ('09) 6,924학급, 572학급 증설

○ 학생수 변화 추이

- '09년 특수교육대상학생은 75,187명으로 '08년보다 3,703명이 증가하였으며 최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기회 확대 및 지원 서비스 강화로 특수교육대상자로 등록하는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 특수교육 지원내용 : 무상교육 지원,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특수교육기관 종일반·방과후학교 운영,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치료지원 제공, 병원학교 설치 운영, 일반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특수교육대상학생 학교급식비 등 지원,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학교기업 운영 등 진로직업교육 지원, 장애인식 개선 사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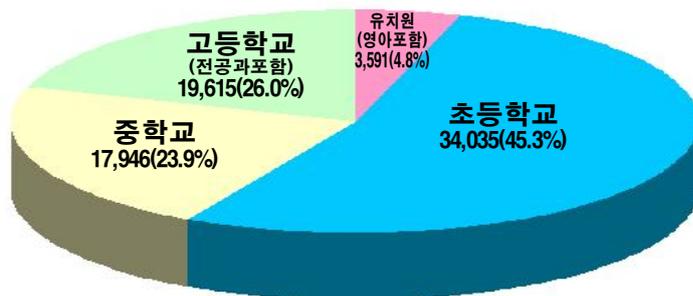
○ 특수교육 담당교원 1인당 학생수

- '09년 특수교육 담당교원 1인당 학생수는 5.4명임
 - ※ '05년 5.6:1 → '06년 5.6:1 → '07년 5.4:1 → '08년 5.4:1 → '09년 5.4:1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사 배치 기준을 학생 4명당 1명으로 규정하고 있음

II. 2009년 특수교육 주요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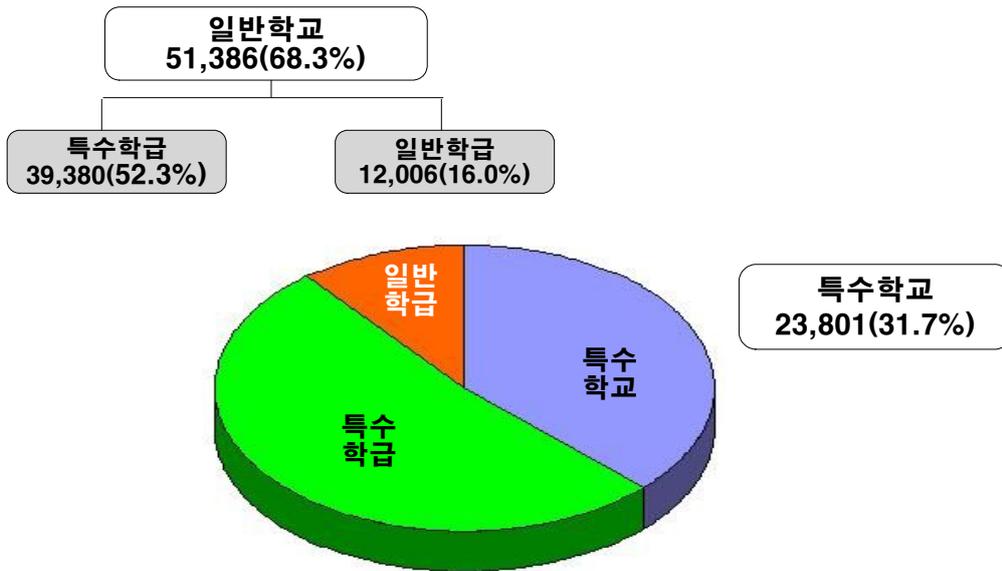
1. 특수교육대상학생 현황

구 분		특수학교	일 반 학 교		특수교육 지원센터	계	
			특수학급	일반학급			
전체 특수교육대상학생		23,606	39,380	12,006	195	75,187	
학 생 영 역 별	장애 영역 별	시각장애	1,470	292	348	3	2,113
		청각장애	1,257	849	1,255	24	3,385
		정신지체	15,353	21,973	3,245	30	40,601
		지체장애	3,206	3,729	2,609	115	9,659
		정서·행동장애	860	2,035	642	-	3,537
		자폐성장애	983	3,256	408	-	4,647
		의사소통장애	92	599	632	1	1,324
		학습장애	13	5,390	1,123	-	6,526
		건강장애	16	538	1,391	-	1,945
		발달지체	356	719	353	22	1,450
계		23,606	39,380	12,006	195	75,187	
수 과 정 별	과 정 별	유치원(영아포함)	949	720	1,727	195	3,591
		초등학교	7,271	22,469	4,295	-	34,035
		중학교	6,181	9,197	2,568	-	17,946
		고등학교	7,143	6,994	3,416	-	17,553
		전공과	2,062	-	-	-	2,062
		계	23,606	39,380	12,006	195	75,187
학 교 수		150	5,324	5,704	-	11,178	
학 급 수		3,637	6,924	10,905	-	21,466	
특수학교(급)교원수		6,612	7,128	-	257	13,997	
특수교육보조원 배치수		2,411	5,153	681	-	8,245	



※ 계 : 75,187명

[학교급별 특수교육대상학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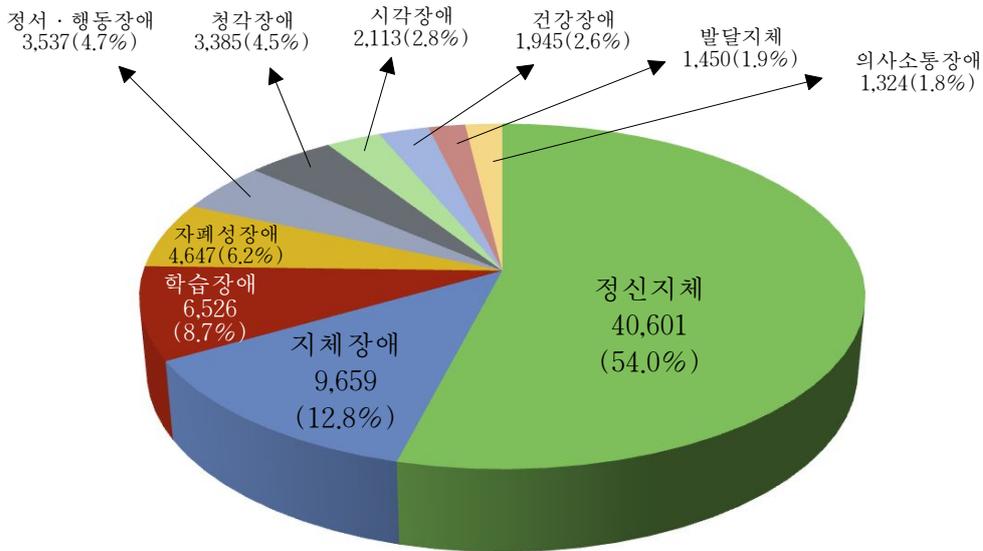
※ 계 : 75,187명

[교육환경별 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현황]

〈연도별 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 현황〉

(단위 : 명, %)

연 도	특수학교 배치학생수	일반학교(일반학급) 배치학생수			전체학생수
		특수학급	일반학급	소계	
2005	23,449 (40.2)	29,803	5,110	34,913 (59.8)	58,362 (100)
2006	23,291 (37.2)	32,506	6,741	39,247 (62.8)	62,538 (100)
2007	22,963 (34.8)	35,340	7,637	42,977 (65.2)	65,940 (100)
2008	23,400 (32.7)	37,857	10,227	48,084 (67.3)	71,484 (100)
2009	23,801 (31.7)	39,380	12,006	51,386 (68.3)	75,187 (100)



※ 계 : 75,187명

[장애영역별 특수교육대상학생 현황]

<연도별 장애영역별 학생수>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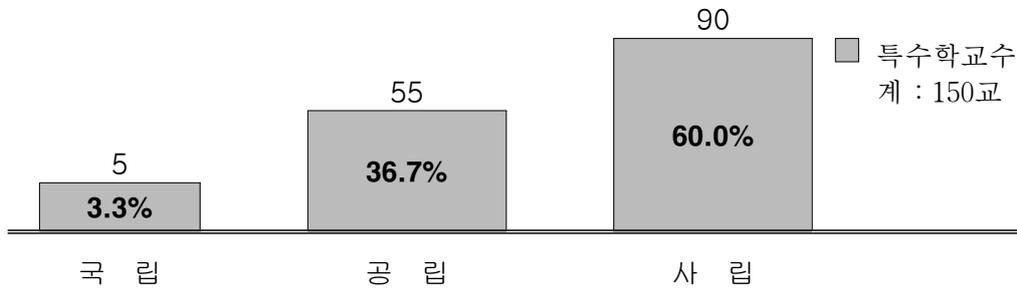
연도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전체학생수
'05	1,745 (3)	2,549 (4)	33,618 (57.6)	5,924 (10)	5,870 (10)	-	-	8,447 (15)	209 (0.4)	-	58,362 (100)
'06	1,902 (3)	2,806 (5)	33,958 (54)	6,957 (11)	8,852 (14)	-	301 (0.4)	6,738 (11)	1,024 (1.6)	-	62,538 (100)
'07	2,292 (3.5)	2,864 (4.3)	36,041 (54.7)	7,739 (11.7)	7,695 (11.6)	-	1,185 (1.8)	6,982 (10.6)	1,142 (1.7)	-	65,940 (100)
'08	2,103 (3.0)	3,073 (4.3)	40,222 (56.3)	8,788 (12.3)	7,681 (10.7)	-	1,226 (1.7)	6,754 (9.4)	1,637 (2.3)	-	71,484 (100)
'09	2,113 (2.8)	3,385 (4.5)	40,601 (54.0)	9,659 (12.8)	3,537 (4.7)	4,647 (6.2)	1,324 (1.8)	6,526 (8.7)	1,945 (2.6)	1,450 (1.9)	75,187 (100)

※ 2009년부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장애영역별 조사

2. 특수학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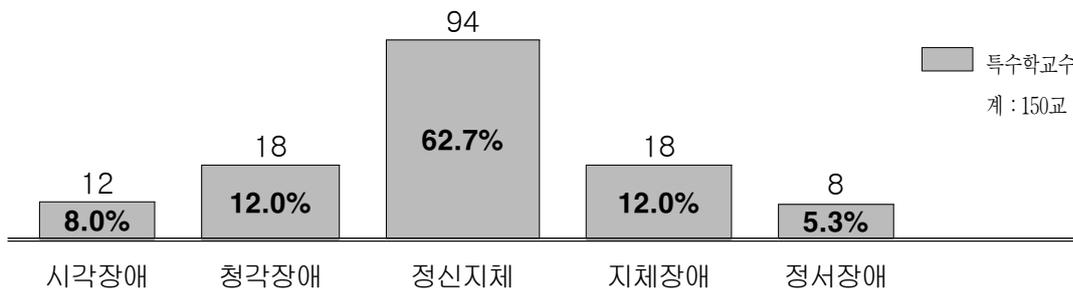
<설 립 별>

구 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비 고
국 립	5	170	958	333	사립의존도 60.0%
공 립	55	1,661	10,641	2,910	
사 립	90	1,806	12,007	3,369	
계	150	3,637	23,606	6,612	



<장애영역별>

계	장애영역별 학교수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장애
150	12	18	94	18	8



<시·도별 특수학교 현황>

시 도	설립별 학교수				장애영역별 학교수					
	국립	공립	사립	계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장애	계
서울	3	7	19	29	2	4	15	5	3	29
부산	-	6	7	13	1	2	9	1	-	13
대구	-	2	6	8	1	1	3	2	1	8
인천	-	3	4	7	1	1	4	1	-	7
광주	-	2	3	5	1	1	2	1	-	5
대전	-	2	2	4	1	-	2	1	-	4
울산	-	1	2	3	-	1	2	-	-	3
경기	2	5	19	26	-	3	20	1	2	26
강원	-	5	2	7	1	1	5	-	-	7
충북	-	2	7	9	2	1	3	2	1	9
충남	-	4	2	6	-	-	5	1	-	6
전북	-	4	5	9	1	1	5	2	-	9
전남	-	2	5	7	1	1	5	-	-	7
경북	-	2	5	7	-	-	6	-	1	7
경남	-	6	1	7	-	1	6	-	-	7
제주	-	2	1	3	-	-	2	1	-	3
총 계	5	55	90	150	12	18	94	18	8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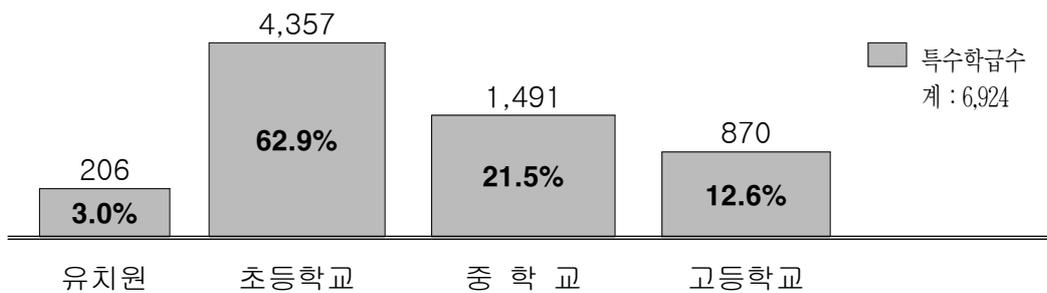
<시·도별 학교과정 설치별 학교수>

시·도	학교수	학교과정 설치별 학교수					
		영아학급	유치부	초등부	중학부	고등부	전공과
서울	29	5	26	26	26	25	15
부산	13	2	11	11	10	9	4
대구	8	-	3	8	8	8	3
인천	7	1	6	7	7	7	4
광주	5	-	3	5	5	5	2
대전	4	-	4	4	4	4	3
울산	3	1	2	3	3	3	2
경기	26	1	23	22	22	20	9
강원	7	-	7	7	7	7	4
충북	9	1	9	9	9	9	5
충남	6	1	5	6	5	5	4
전북	9	-	5	8	8	8	3
전남	7	-	6	7	7	7	2
경북	7	-	4	7	7	7	6
경남	7	-	5	7	7	7	5
제주	3	-	3	3	3	3	2
총계	150	12	122	140	138	134	73

3. 일반학교 특수교육 현황

<특수학급>

과 정 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유 치 원	181	206	720	210
초등학교	3,413	4,357	22,469	4,365
중 학 교	1,189	1,491	9,197	1,482
고등학교	541	870	6,994	986
재활복지	-	-	-	85
계	5,324	6,924	39,380	7,128



<일반학급>

학 교 급	학 교 수	학 급 수	학 생 수
유 치 원	1,169	1,524	1,727
초등학교	2,198	4,024	4,295
중 학 교	1,227	2,339	2,568
고등학교	1,110	3,018	3,416
계	5,704	10,905	12,006

4. 순회교육 및 병원학교 현황

<순회교육 운영 현황>

(단위 : 명, 급)

구 분	학 생 수					학급수	교사수
	가정	시설	병원	일반학교	계		
특수학교에서 순회·파견	373	442	74	-	889	198	207
특수학급에서 순회·파견·겸임	555	1,083	24	853	2,515	431	556
계	928	1,525	98	853	3,404	629	763

<병원학교 현황>

(단위 : 교, 명)

학교수	월평균 학생수	교사 및 담당자수	병 원 명	
			교육청 소속 병원학교	교육청과 병원간 협약 및 병원자체 운영 병원학교*
30	699	36	경상대병원, 부산대병원, 인제대부산백병원, 동아대의료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암센터, 대구영남대의료원, 대동병원, 가천의대부속길병원, 인하대부속병원, 울산대병원, 충남대병원, 건양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단국대천안병원, 강릉아산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전북대병원, 경북대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한양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국립서울병원, 서울시립병원, 경희대의료원, 한국원자력병원, 서울성모병원

5. 초등학교 취학유예 장애학생 현황

(단위 : 명, %)

취학유예자수	질병	발육부진	장애	기타
9,824 (100)	590 (6.0)	3,492 (35.5)	1,385 (14.1)	4,357 (44.4)

6. 특수교육대상학생 고등학교 졸업자 진로상황

(단위 : 명, %)

구 분	졸 업 자 수	진 학 률 (%)	진학지수				취 업 률 (%)	취업자수														미 진 학 · 미 취 업 자 수
			전 공 과	전 문 대 학	대 학 교	소 계		공 예	포 장 조 리 운 반	농 업	제 과 제 빵	IT 및 정 보 서 비 스	상 업	이 료	서 비 스 업	사 무 직	노 무 직	복 지 관 등*	기 타	소 계		
특수 학교	2,181	50.4	968	47	84	1,099	49.4	6	82	1	8	9	1	117	29	1	29	230	21	534	548	
특수 학급	1,641	31.9	250	174	100	524	52.6	5	91	27	10	5	2	-	63	8	35	323	19	588	529	
일반 학급	667	58.5	40	161	188	390	25.6	17	6	3	-	2	2	-	7	5	9	16	4	71	206	
계	4,489	44.8	1,258	339	372	2,013	48.2	28	179	31	18	16	5	117	99	14	73	569	44	1,193	1,283	

※ 진학률 = (당해년도 졸업자중 진학자/당해년도 졸업자)×100

※ 취업률 = {취업자수/(졸업자수-진학자수)}×100

7. 시·도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시·도	지역 교육청 수	특수교사		재활복지 교사		행정직		합계			기타 계약직				연간 지원 예산 (총액)
		정규	강사	정규	강사	정규	계약	정규	계약	계	치료사	보조원	기타	계	
서울	11	1	10	41	-	3	-	45	10	55	1	-	8	9	2,089
부산	5	4	-	22	-	-	1	26	1	27	5	-	14	19	9,043
대구	4	4	6	10	4	-	-	14	10	24	-	-	5	5	765
인천	5	6	17	15	-	-	-	21	17	38	1	6	9	16	1,090
광주	2	2	6	7	-	-	-	9	6	15	-	-	2	2	727
대전	2	4	1	7	2	1	-	12	3	15	2	3	2	7	443
울산	2	1	11	5	1	-	-	6	12	18	14	2	5	21	2,436
경기	25	6	26	42	15	1	-	49	41	90	39	1	2	42	5,836
강원	17	2	17	12	4	-	-	14	21	35	-	5	3	8	1,807
충북	11	2	23	5	7	-	-	7	30	37	11	-	22	33	3,785
충남	15	17	20	17	4	1	14	35	38	73	8	3	5	16	3,908
전북	14	-	28	11	3	-	-	11	31	42	-	-	-	0	2,452
전남	22	1	39	7	25	-	-	8	64	72	-	-	4	4	2,995
경북	23	-	33	17	9	-	-	17	42	59	-	-	4	4	2,949
경남	20	-	28	18	17	-	-	18	45	63	13	-	-	13	2,995
제주	2	2	7	3	-	-	-	5	7	12	2	1	-	3	509
계	180	52	272	239	91	6	15	297	378	675	96	21	85	202	43,829

8. 시·도별 특수학급 설치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평균 설치비율

(단위 : 교, %)

시·도	특수 학급 설치 초· 중· 고교	매 개 시 설						내 부 시 설						위생시설		평균 설치 비율
		주출입구 접 근 로		장 애 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 거		출입구 출입문		복도 손잡이		승강기 경사로 등		화장실 대변기		
		설치 교수	설치 비율	설치 교수	설치 비율	설치 교수	설치 비율	설치 교수	설치 비율	설치 교수	설치 비율	설치 교수	설치 비율	설치 교수	설치 비율	
서울	553	506	91.5	551	99.6	492	89.0	459	83.0	458	82.8	315	57.0	552	99.8	86.1
부산	383	383	100	383	100	383	100	383	100	351	91.6	220	57.4	380	99.2	92.6
대구	209	209	100	209	100	209	100	209	100	205	98.1	196	93.8	209	100	98.8
인천	309	309	100	309	100	309	100	309	100	309	100	291	94.2	309	100	99.2
광주	309	309	100	309	100	309	100	309	100	309	100	309	100	309	100	100
대전	160	160	100	160	100	150	93.8	153	95.6	140	87.5	121	75.6	155	96.9	92.8
울산	93	93	100	93	100	93	100	93	100	93	100	92	98.9	93	100	99.8
경기	1,050	1,018	97.0	1,011	96.3	1,003	95.5	967	92.1	929	88.5	884	84.2	1,005	95.7	92.7
강원	285	274	96.1	267	93.7	280	98.2	285	100	255	89.5	252	88.4	270	94.7	94.4
충북	213	213	100	213	100	208	97.7	203	95.3	177	83.1	148	69.5	205	96.2	91.7
충남	348	348	100	348	100	348	100	348	100	348	100	142	40.8	348	100	91.5
전북	247	235	95.1	242	98.0	210	85.0	215	87.0	218	88.3	120	48.6	232	93.9	85.1
전남	330	330	100	330	100	330	100	330	100	330	100	225	68.2	330	100	95.5
경북	356	306	86.0	329	92.4	286	80.3	265	74.4	252	70.8	205	57.6	309	86.8	78.3
경남	399	395	99.0	394	98.7	395	99.0	394	98.7	393	98.5	352	88.2	398	99.7	97.4
제주	62	60	96.8	60	96.8	60	96.8	62	100	62	100	48	77.4	61	98.4	95.2
합계	5,306	5,148	97.0	5,208	98.2	5,065	95.5	4,984	93.9	4,829	91.0	3,920	73.9	5,165	97.3	92.4

Ⅲ. 2009년도 추진 실적

1.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체제 구축

1) 특수교육기관 현황

(1) 특수학교 신설을 통한 특수교육 기회 확대

□ 관련 법규

- “특수교육기관”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 포함)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
- 특수학교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인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초·중등교육법 제55조)
-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 안의 의무교육대상자 전원을 취학시키는 데 필요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와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함(초·중등교육법 제12조제2항)

□ 현황 및 추진실적

- 2009년 4월 현재 전국의 특수학교 수는 150개교로 특수교육 초창기인 1962년의 10개교에 비해 15배 증가하였으며 전년도인 2008년도에 비해 1개교가 신설됨

<표 3·1> 연도별 특수학교 수 (단위 : 교)

연도	'67	'72	'77	'82	'87	'92	'97	'02	'03	'04	'05	'06	'07	'08	'09
학교수	22	38	51	65	95	103	114	136	137	141	142	143	144	149	150

- 2009년 신설 특수학교로 충남교육청 관내 아산성심학교(공립)가 개교함

<표 3·2> 신설 특수학교 현황 (단위 : 급, 명)

지역	학 교 명	설립별	개교일	학급수						학생수
				유	초	중	고	전공과	계	
충남	아산성심학교	공립	'09. 04. 24	1	6	5	7	2	21	141

- 전국 150개 특수학교를 설립별로 구분하면 국립 5개교, 공립 55개교, 사립 90개교로 사립학교 비율이 전체의 60%임
- 전국 150개 특수학교를 장애영역별로 구분하면 시각장애학교 12개교, 청각장애학교 18개교, 정신지체학교 94개교, 지체장애학교 18개교, 정서장애학교 8개교로 정신지체학교가 전체의 62.7%임

<표 3·3> 설립별·장애영역별 특수학교 수 (단위 : 교)

구분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장애	소 계
국립	1	1	1	1	1	5
공립	2	4	43	5	1	55
사립	9	13	50	12	6	90
합계	12	18	94	18	8	150

- 전국 150개 특수학교를 지역별로 구분하면 서울 29개교, 부산 13개교, 대구 8개교, 인천 7개교, 광주 5개교, 대전 4개교, 울산 3개교, 경기 26개교, 강원 7개교, 충북 9개교, 충남 6개교, 전북 9개교, 전남 7개교, 경북 7개교, 경남 7개교, 제주 3개교임

<표 3·4>

시·도별,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수

(단위 : 교)

시·도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장애	계
서울	2	4	15	5	3	29
부산	1	2	9	1	-	13
대구	1	1	3	2	1	8
인천	1	1	4	1	-	7
광주	1	1	2	1	-	5
대전	1	-	2	1	-	4
울산	-	1	2	-	-	3
경기	-	3	20	1	2	26
강원	1	1	5	-	-	7
충북	2	1	3	2	1	9
충남	-	-	5	1	-	6
전북	1	1	5	2	-	9
전남	1	1	5	-	-	7
경북	-	-	6	-	1	7
경남	-	1	6	-	-	7
제주	-	-	2	1	-	3
계	12	18	94	18	8	150

※ 장애영역별 구분은 주된 장애영역을 말함

- 특수학교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 국·공·사립특수학교가 설치·운영되고 있고, 그 외 시도교육청에는 공·사립 특수학교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표 3·5>

시·도별, 설립별 특수학교 수

(단위 : 교)

시·도	국립	공립	사립	계
서울	3	7	19	29
부산	-	6	7	13
대구	-	2	6	8
인천	-	3	4	7
광주	-	2	3	5
대전	-	2	2	4
울산	-	1	2	3
경기	2	5	19	26
강원	-	5	2	7
충북	-	2	7	9
충남	-	4	2	6
전북	-	4	5	9
전남	-	2	5	7
경북	-	2	5	7
경남	-	6	1	7
제주	-	2	1	3
계	5	55	90	150

□ 향후 과제

- 모든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지역별 균형과 수요를 반영한 특수학교(급) 신·증설 추진
- 장애영역별 특수학교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특정 장애영역보다는 종합특수학교로 운영형태 전환

(2) 특수학급 증설을 통한 특수교육 기회 확대

□ 관련 법규

-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1항)
-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둘 수 있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음
 1. 유치원 과정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2. 초등학교·중학교 과정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3. 고등학교 과정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7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 현황 및 추진실적

- 1971년부터 설치·운영되기 시작한 특수학급은 2009년 4월 현재 6,924개 학급으로 2008년보다 572개 학급이 증가함

<표 3·6>

연도별 특수학급 수

(단위 : 학급)

연도	'71	'76	'80	'85	'90	'95	'00	'03	'04	'05	'06	'07	'08	'09
학급수	1	350	355	1,601	3,181	3,440	3,802	4,102	4,366	4,697	5,204	5,753	6,352	6,924

- 2009년 4월 현재 일반학교 대비 특수학급 설치 학교의 평균 비율은 27.3%이며 학교과정별로는 유치원 2.2%, 초등학교 57.9%, 중학교 38.3%, 고등학교 24.3%임

<표 3·7> 시·도별, 학교과정별 일반학교 대비 특수학급 설치율

(단위 : 학급)

시·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전체수	설치교수	비율	전체수	설치교수	비율	전체수	설치교수	비율	전체수	설치교수	비율	전체수	설치교수	비율
서울	862	34	3.9	584	341	58.4	374	161	43.0	308	51	16.6	2,128	587	27.6
부산	377	11	2.9	297	271	91.2	172	77	44.8	142	35	24.6	988	394	39.9
대구	303	3	1.0	215	144	67.0	123	48	39.0	91	17	18.7	732	212	29.0
인천	368	7	1.9	224	175	78.1	126	70	55.6	111	57	51.4	829	309	37.3
광주	235	6	2.6	145	102	70.3	84	32	38.1	65	17	26.2	529	157	29.7
대전	235	14	6.0	138	99	71.7	86	40	46.5	61	21	34.4	520	174	33.5
울산	180	3	1.7	116	53	45.7	61	25	41.0	49	15	30.6	406	96	23.6
경기	1,907	42	2.2	1,112	670	60.3	556	261	46.9	397	119	30.0	3,972	1,092	27.5
강원	404	7	1.7	418	212	50.7	164	48	29.3	114	25	21.9	1,100	292	26.5
충북	326	7	2.1	258	132	51.2	131	52	39.7	82	29	35.4	797	220	27.6
충남	523	13	2.5	432	237	54.9	192	80	41.7	117	31	26.5	1,264	361	28.6
전북	511	8	1.6	423	194	45.9	204	38	18.6	130	15	11.5	1,268	255	20.1
전남	582	15	2.6	437	224	51.3	247	74	30.0	154	33	21.4	1,420	346	24.4
경북	684	3	0.4	496	252	50.8	278	73	26.3	193	31	16.1	1,651	359	21.7
경남	686	7	1.0	495	269	54.3	265	93	35.1	181	40	22.1	1,627	409	25.1
제주	110	1	0.9	106	40	37.7	42	17	40.5	30	5	16.7	288	63	21.9
계	8,293	181	2.2	5,896	3,415	57.9	3,105	1,189	38.3	2,225	541	24.3	19,519	5,326	27.3

- 학교과정별로 특수학급은 유치원 206학급, 초등학교 4,357학급, 중학교 1,491학급, 고등학교 870학급으로 초등학교 과정의 특수학급이 전체 특수학급의 62.9%를 차지함

<표 3·8>

시·도별, 학교과정별 특수학급 수

(단위 : 학급)

시·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 학교	고등학교	계
서울	34	607	227	137	1,005
부산	11	337	78	49	475
대구	3	189	54	34	280
인천	16	255	76	65	412
광주	6	120	47	26	199
대전	14	116	43	26	199
울산	4	74	33	20	131
경기	51	938	398	228	1,615
강원	7	220	53	28	308
충북	7	136	55	38	236
충남	18	274	92	51	435
전북	8	198	41	16	263
전남	16	244	85	48	393
경북	3	298	88	45	434
경남	7	308	104	49	468
제주	1	43	17	10	71
계	206	4,357	1,491	870	6,924

- 운영형태별로 특수학급은 전일제 381학급(전일제 형태의 순회·과견학급 포함), 시간제 6,543학급으로 시간제 특수학급이 전체 특수학급의 94.5%를 차지함
- 지역별로 특수학급은 전북, 제주교육청은 모두 시간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은 시간제와 전일제특수학급을 같이 운영하고 있음

<표 3·9>

시·도별, 운영형태별 특수학급 수

(단위 : 학급)

시·도	전 일 제	시 간 제	계
서 울	4	1,001	1,005
부 산	4	471	475
대 구	5	275	280
인 천	4	408	412
광 주	8	191	199
대 전	6	193	199
울 산	8	123	131
경 기	202	1,413	1,615
강 원	6	302	308
충 북	2	234	236
충 남	16	419	435
전 북	-	263	263
전 남	73	320	393
경 북	21	413	434
경 남	22	446	468
제 주	-	71	71
계	381	6,543	6,924

- 특수학교(급) 학급당 학생 정원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이며 현재 전국 평균 학급당 학생 수가 유치원 3.5명, 초등학교 5.2명, 중학교 6.6명, 고등학교의 경우 8.2명임

<표 3·10> 시도별, 학교과정별 특수학교(급)의 학급당 학생 정·현원

(단위 : 명)

시도	특수학교				특수학급				계			
	유	초	중	고	유	초	중	고	유	초	중	고
정원	4	6	6	7	4	6	6	7	4	6	6	7
서울	3.2	5.8	7.9	7.9	3.1	5.2	6.0	8.3	3.2	5.5	7.0	8.1
부산	4.6	5.1	6.7	8.9	3.0	5.0	7.0	9.3	3.8	5.1	6.9	9.1
대구	4.2	5.5	6.5	7.3	4.3	5.6	8.1	11.1	4.3	5.6	7.3	9.2
인천	3.2	4.3	7.1	8.0	3.9	5.8	6.8	7.6	3.6	5.1	7.0	7.8
광주	2.7	4.7	7.2	7.9	2.3	4.6	6.1	8.1	2.5	4.7	6.7	8.0
대전	4.1	5.5	8.0	9.1	4.8	6.1	6.7	10.3	4.5	5.8	7.4	9.7
울산	2.0	4.5	5.4	8.0	5.5	5.5	6.1	7.5	3.8	5.0	5.8	7.8
경기	3.7	5.9	8.2	9.0	3.3	5.7	6.2	7.9	3.5	5.8	7.2	8.5
강원	2.4	4.7	5.9	7.3	3.1	4.1	5.4	4.8	2.8	4.4	5.7	6.1
충북	3.6	5.6	6.5	7.9	4.0	5.4	5.8	6.9	3.8	5.5	6.2	7.4
충남	3.4	4.6	5.8	8	3.6	4.9	5.5	8.2	3.5	4.8	5.7	8.1
전북	3.2	5.7	7.8	8.8	2.9	4.1	7.1	9.2	3.1	4.9	7.5	9.0
전남	3.2	5.4	8.1	10.4	3.8	5.2	5.8	7.9	3.5	5.3	7.0	9.2
경북	3.1	5.2	6.5	8.1	2.3	4	5.2	7.1	2.7	4.6	5.9	7.6
경남	3.4	4.7	5.9	7.8	4.3	5.5	6.2	7.6	3.9	5.1	6.1	7.7
제주	2.3	4.5	5.1	5.7	3	5.8	7.4	9.3	2.7	5.2	6.3	7.5
평균	3.3	5.1	6.8	8.1	3.6	5.2	6.3	8.2	3.5	5.2	6.6	8.2

□ 향후 과제

- 지역별 특수교육 수요를 감안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과정별 교육연계성 보장을 위한 균형적 특수학급 설치 추진
- 특수학교(급)의 중,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정원 감축

2)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1) 특수학교 학생 현황

- 2009년 4월 현재 특수학교의 재학생은 23,606명으로 2008년도의 23,400명에 비해 206명이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소규모 증가를 보임
 - 최근의 특수학교 학생수 감소 또는 소규모 증가 추세는 통합교육 확대에 의해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 배치를 희망하는 특수교육대상자가 늘어나기 때문임

<표 3·11> 연도별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단위 : 명)

연도	'67	'72	'77	'82	'87	'92	'97	'00	'02	'03	'04	'05	'06	'07	'08	'09
학생수	3,121	5,188	7,342	10,679	17,373	20,690	22,789	24,196	24,276	24,192	23,762	23,449	23,291	22,963	23,400	23,606

- 지역별,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설립분포의 차이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영역별 구성비율에 차이가 있음

<표 3·12> 시·도별,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단위 : 명)

구 분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정신 지체	지체 장애	정서행동 장애*	자폐성 장애*	의사소통 장애	학습 장애	건강 장애	발달 지체	소계
서울	415	447	2,595	930	117	373	8	-	1	97	4,983
부산	114	126	1,069	277	27	32	1	-	1	67	1,714
대구	91	67	857	214	100	59	2	1	0	11	1,402
인천	131	110	746	98	8	12	-	-	3	5	1,113
광주	106	29	524	214	1	25	6	-	-	12	917
대전	124	33	468	114	16	25	-	-	1	9	790
울산	12	65	435	28	-	-	-	-	0	-	540
경기	9	97	2,740	342	123	284	27	9	2	54	3,687
강원	122	32	697	68	4	26	7	-	2	22	980
충북	201	128	544	237	162	55	3	-	-	4	1,334
충남	3	4	739	107	25	34	7	-	-	19	938
전북	54	40	806	177	10	6	1	-	-	8	1,102
전남	76	21	720	50	8	1	20	-	-	11	907
경북	-	15	1,296	58	25	17	4	3	1	10	1,429
경남	4	36	851	214	169	27	6	-	5	23	1,335
제주	8	7	266	78	65	7	-	-	-	4	435
계	1,470	1,257	15,353	3,206	860	983	92	13	16	356	23,606

- 설립별로 특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는 국립학교 958명(4%), 공립학교 10,641명(45.1%), 사립학교 12,007명(50.9%)임
 - 사립특수학교는 위탁교육기관으로 인건비, 시설비 및 운영비 등을 전액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음
- 장애영역별로 특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시각장애학교 1,426명, 청각장애학교 1,398명, 정신지체학교 16,309명, 지체장애학교 2,635명, 정서장애학교 1,838명으로 정신지체학교의 학생비율이 전체 69.1%로 가장 많음

<표 3·13> 설립별·장애영역별 특수학교 학생 수

(단위 : 명)

구 분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장애	소계
국 립	273	189	197	160	139	958
공 립	236	172	8,847	990	396	10,641
사 립	917	1,037	7,265	1,485	1,303	12,007
계	1,426	1,398	16,309	2,635	1,838	23,606

※ 학생 개인의 장애영역이 아닌,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배치 학생수 임

○ 지역별로 사립특수학교에 위탁된 특수교육대상자의 비율은 전국 평균 50.9%임

<표 3·14> 시·도별, 설립별 특수학교 학생 수

(단위 : 명, %)

시 · 도	국 립	공 립	사 립	계	사립학교 위탁비율
서 울	572	1,516	2,895	4,983	58.1
부 산	-	1,116	598	1,714	34.9
대 구	-	555	847	1,402	60.4
인 천	-	662	451	1,113	40.5
광 주	-	570	347	917	37.8
대 전	-	394	396	790	50.1
울 산	-	213	327	540	60.6
경 기	386	1,081	2,220	3,687	60.2
강 원	-	804	176	980	18.0
충 북	-	360	974	1,334	73.0
충 남	-	776	162	938	17.3
전 북	-	489	613	1,102	55.6
전 남	-	362	545	907	60.1
경 북	-	291	1,138	1,429	79.6
경 남	-	1,201	134	1,335	10.0
제 주	-	251	184	435	42.3
계	958 (4.0%)	10,641 (45.1%)	12,007 (50.9%)	23,606 (100%)	50.9

(2) 특수학급 학생 현황

- 2009년 4월 현재 특수학급의 학생 수는 39,380명으로 2008년도에 비해 1,523명 증가함
- 특수학급의 학생 수 증가는 최근 통합교육 확산에 따라 특수학급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 비해 현재 특수학급이 572학급 증가함에 따름

<표 3·15>

연도별 특수학급 학생 수

(단위 : 명)

연도	'71	'82	'86	'91	'96	'00	'02	'03	'04	'05	'06	'07	'08	'09
학생수	30	7,665	30,876	28,795	26,087	26,627	26,925	26,868	28,002	29,803	32,506	35,340	37,857	39,380

- 학교과정별 특수학급의 학생 수는 유치원 720명, 초등학교 22,469명, 중학교 9,197명, 고등학교 6,994명임

<표 3·16>

시·도별, 학교과정별 특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단위 : 명)

시·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서울	103	3,149	1,350	1,141	5,743
부산	33	1,680	543	455	2,711
대구	12	1,033	401	348	1,794
인천	63	1,482	518	497	2,560
광주	14	546	286	211	1,057
대전	67	703	288	269	1,327
울산	22	410	201	150	783
경기	168	5,296	2,473	1,790	9,727
강원	22	897	287	135	1,341
충북	28	730	321	261	1,340
충남	65	1,352	513	422	2,352
전북	23	813	292	148	1,276
전남	60	1,258	496	380	2,194
경북	7	1,184	459	321	1,971
경남	30	1,685	644	373	2,732
제주	3	251	125	93	472
계	720	22,469	9,197	6,994	39,380

(3) 일반학교 배치 학생 현황

- 2009년 4월 현재 일반학급에 전일제로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는 유치원 1,727명, 초등학교 4,295명, 중학교 2,568명, 고등학교 3,416명으로 모두 12,006명임

<표 3·17> 시·도별, 학교과정별 일반학급 전일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단위 : 명)

시·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서울	265	630	397	495	1,787
부산	212	113	88	205	618
대구	115	147	156	248	666
인천	110	137	78	90	415
광주	73	107	23	13	216
대전	64	261	147	125	597
울산	52	300	127	143	622
경기	296	825	462	981	2,564
강원	50	115	108	63	336
충북	42	169	170	191	572
충남	77	223	128	168	596
전북	60	286	188	97	631
전남	37	94	81	117	329
경북	92	328	167	173	760
경남	147	437	210	257	1,051
제주	35	123	38	50	246
계	1,727	4,295	2,568	3,416	12,006

(4) 순회교육 학생 현황

□ 관련 법규

- 교육감은 장애정도가 심하여 장·단기의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2009년 현재 특수학교에서 가정 373명, 시설 442명, 병원 74명, 총 889명의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순회학급 128학급, 파견학급 70학급 총 198학급을 편성하여 207명의 교사들이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표 3·18> 특수학교 순회교육 대상자 수

(단위 : 학급, 명)

구 분	학 생 수					학 급 수			교 사 수		
	가정	시설	병원	일반 학교	계	순회	파견	계	순회	파견	계
특수학교에서 순회·파견	373	442	74	-	889	128	70	198	131	76	207

- 2009년 현재 특수학급에서 가정, 시설, 병원, 일반학교 등에 순회학급 307학급 파견학급 124학급, 모두 431학급에서 1,393명의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해 556명의 교사들이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표 3·19> 특수학급 순회교육 대상자 수

(단위 : 학급, 명)

구 분	학 생 수					학 급 수			교 사 수			
	가정	시설	병원	일반 학교	계	순회	파견	계	순회	파견	겸임 순회	계
특수학급에서 순회·파견	514	347	8	524	1,393	307	124	431	307	123	126	556

□ 향후 과제

- 중도·중복장애로 이동이 곤란한 가정·병원·시설 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교교육 제공을 위한 지원 확대
- 순회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순회교육 전담 특수교육교사의 배치 확대

(5) 병원학교 지원 현황

□ 관련 법규

-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지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원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

※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시스템은 건강장애학생들을 위해 병원 내에 학교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실시간 온라인으로 수업을 제공하고 출석인정을 하는 제도임

□ 현황 및 추진실적

- 2009년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병원학교는 30개교로 이 중 서울지역의 10개 병원은 교육청과 협약을 토대로 하여 교육청에서 행·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병원 자체운영 체제이며, 20개 병원학교는 교육청 소속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의 파견학급으로 운영됨

<표 3·20>

병원학교 현황

(단위 : 교, 명)

학교수	월평균 학생수	교사 및 담당자수	병 원 명	
			교육청 소속 병원학교	교육청과 병원간 협약 및 병원자체 운영 병원학교*
30	699	36	경상대병원, 부산대병원, 인제대부산백병원, 동아대의료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암센터, 대구영남대의료원, 대동병원, 가천의대부속길병원, 인하대부속병원, 울산대병원, 충남대병원, 건양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단국대천안병원, 강릉아산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전북대병원, 경북대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한양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국립서울병원, 서울시립병원, 경희대의료원, 한국원자력병원, 서울성모병원

<표 3·21>

병원학교별 학생 및 운영 현황

(단위 : 명)

시도	병원명	월평균 이용학생수	건강장애 학생수	담당 특수교사수 (서울지역은 담당자자격 및 수)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서울	경희의료원	5	5	사회복지사 1	교과, 재량활동, 방과후활동 등
	국립서울병원	27	27	특수교사 1, 유치원교사 1	"
	삼성서울병원	50	50	사회복지사 1	"
	서울대병원	24	91	평생교육사 1	"
	서울성모병원	34	50	사회복지사 1	"
	서울시립어린이병원	2	2	특수교사 1	"
	서울아산병원	30	65	사회복지사 1	"
	세브란스병원	53	53	초등교사 1, 중등교사 1	"
	한국원자력의학원	18	20	사회복지사 1, 간호사 1	"
	한양대병원	18	52	병원직원 1	"
부산	동아대병원	13	1	1	"
	부산대병원	28	28	1	"
	인제대병원	10	10	1	"
대구	경북대병원	14	10	1	"
	대동병원(나래학교)	19	9	1	"
	영남대병원	21	11	1	"
인천	길병원	30	3	1	"
	인하대병원	30	5	1	"
대전	건양대병원	15	-	1	"
	충남대병원	20	17	1	"
울산	울산다솜병원학교	33	48	1 특수교육지원센터1	"
경기	국립암센터	18	13	2	"
강원	강릉아산병원	45	12	1	"
	강원대병원	40	5	1	"
충북	충북대병원	6	8	1	"
충남	단국대병원	20	7	1	"
전북	전북대병원	25	10	1	"
전남	화순전남대병원	38	30	2	"
경남	국립부곡병원	3	3	1	"
	경상대병원	10	7	1	"
계	30	699	652	36	

- 건강장애학생 학습 지원을 위해 3개 교육청(서울, 인천, 경남)에서 화상강의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이용학생 수는 1,155명임

<표 3·22> 화상강의 기관 현황

시·도	기관명	사이버 학급수	강사수	학생수	건강장애학생수
서울	꽃맞무지개학교	45	32	483	472
인천	길병원 사이버학급	7	10	53	53
경남	꿈사랑 사이버학교	33	19	619	615
계		85	61	1,155	1,140

□ 향후 과제

- 건강장애 선정기준 적용의 체계화
- 자원봉사교사제 활용 및 학생 소속 학교와의 연계 강화
- 병원학교 유관기관 및 관계자간 협력체계 운영 활성화
- 건강장애 인식 개선

3) 장애영·유아 무상교육 지원

(1)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 관련 법규

- 만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교육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만3세 미만의 장애영아를 특수학교의 유치원과정,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하거나 순회교육을 제공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8조)
- 장애영아 교육의 수업일수는 매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되 건강상태 및 교육과정의 운영상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으며 장애영아 담당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유치원 과정 담당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3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신설된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은 2008.5.26 법시행에 따라 최근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수학교에 장애영아 학급이 20학급 설치되었음
- 특수학교에서 무상교육 지원을 받는 장애영아 수는 93명이며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원을 받는 수는 모두 195명으로 센터에 와서 교육지원을 받는 수는 157명, 순회교육 지원을 받는 수는 38명임

<표 3·23> 시·도별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현황

(단위 : 명)

시·도	연령별 지원영아 수				특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0세	1세	2세	계	영아 학급수	지원 영아 수	센터지원 영아수	순회지원 영아수
서울	3	9	20	32	6	33	0	0
부산	6	8	14	28	4	27	0	0
대구	-	-	2	2	-	0	2	0
인천	10	42	57	109	3	11	75	8
광주	-	-	-	-	-	2	0	0
대전	1	-	1	2	-	0	0	0
울산	-	8	11	19	1	1	19	0
경기	-	14	36	50	2	6	37	9
강원	-	2	2	4	1	0	0	0
충북	5	7	10	22	1	5	16	6
충남	-	12	13	25	2	8	0	3
전북	1	1	2	4	-	0	0	0
전남	-	-	1	1	-	0	1	0
경북	-	5	7	12	-	0	0	12
경남	-	-	-	-	-	0	0	0
제주	-	1	6	7	-	0	7	0
계	26	109	182	317	20	93	157	38

(2) 장애유아 무상교육 지원

□ 관련 법규

- 특수교육기관이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전공과 포함)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의 의무교육으로 하고 전공과와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2009년 4월 현재 유아특수교육기관은 유치원 과정만 운영하는 특수학교 9개교 54학급, 유치부 운영 특수학교가 122개교 251학급, 일반유치원 특수학급이 181개교에 206학급 운영되고 있음

<표 3·24>

유아특수교육기관 현황

(단위 : 교, 급)

구 분	유치원 과정 특수 학교	특수학교 유치부	유치원 특수학급	계
설치학교수	9	122	181	312
설치학급수	54	251	206	511

- 2009년 4월 현재 유아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는 유치원 과정만 운영하는 특수학교 237명, 특수학교 유치부 856명, 유치원 특수학급 720명, 유치원 일반학급 1,727명 등 총 3,540명임

<표 3·25>

유아특수교육기관 학생 수

(단위 : 명)

구 분	유치원과정 특수학교	특수학교 유치부	유치원 특수학급	유치원 일반학급	계
학생수	237	856	720	1,727	3,540

- 2009년 현재 일반유치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무상교육비 지원 실적은 공립유치원 385명, 사립유치원 1,848명으로 총 2,233명이 무상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음

<표 3·26> 공·사립 일반유치원 특수교육 대상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현황

(단위 : 명, %)

시·도	공 립 유 치 원			사 립 유 치 원		
	신청자수	지원자수	지원비율	신청자수	지원자수	지원비율
서 울	110	110	100	258	258	100
부 산	34	34	100	198	198	100
대 구	3	3	100	118	118	100
인 천	7	7	100	121	121	100
광 주	1	1	100	78	78	100
대 전	10	10	100	63	63	100
울 산	8	8	100	77	77	100
경 기	53	53	100	352	339	96.3
강 원	29	29	100	46	46	100
충 북	18	18	100	21	21	100
충 남	22	22	100	72	72	100
전 북	11	11	100	58	58	100
전 남	12	12	100	45	45	100
경 북	21	21	100	93	93	100
경 남	24	24	100	207	207	100
제 주	22	22	100	54	54	100
계	385	385	100	1,861	1,848	99.3

4) 장애인 고등교육 및 성인교육 지원

(1)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 관련 법규

- 대학에 특별지원위원회를 두어 장애학생 지원 계획수립,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 및 결정 등을 수행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9조)
- 대학에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장애학생 지원, 편의제공,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 등을 담당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0조)
-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위하여 학습보조기기 등 물적지원, 보조인력 배치 등 인적지원, 취학편의 지원, 정보접근 지원, 편의시설 설치 등을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
-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학칙에 규정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2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2009년 2월 특수교육대상학생 고등부 졸업생 4,489명의 진학률을 보면, 특수학교 졸업생의 진학률이 50.4%, 특수학급 졸업생은 31.9%,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졸업생이 58.5%이며 전체 진학률은 44.8%임

<표 3·27> 2009년도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 진학률

(단위 : 명, %)

시·도	졸업생수				진 학 자 수														진학율
					전공과			전문대학			대학교			계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계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소계		
서울	460	358	88	906	179	1	-	14	9	19	27	28	32	220	38	51	309	34.1	
부산	174	94	25	293	83	15	-	5	21	9	5	1	11	93	37	20	150	51.2	
대구	140	81	57	278	12	23	-	6	22	22	5	6	17	23	51	39	113	40.6	
인천	122	118	22	262	25	18	-	2	11	3	10	5	3	37	34	6	77	29.4	
광주	86	44	1	131	37	8	-	1	7	-	8	4	1	46	19	1	66	50.4	
대전	76	56	31	163	48	17	-	2	9	6	4	3	16	54	29	22	105	64.4	
울산	43	34	19	96	22	16	3	-	9	7	2	-	8	24	25	18	67	69.8	
경기	297	408	260	965	111	82	33	-	33	50	7	27	62	118	142	145	405	42.0	
강원	102	26	11	139	65	5	1	1	1	4	-	2	3	66	8	8	82	59.0	
충북	144	77	44	265	66	10	-	8	4	18	7	3	9	81	17	27	125	47.2	
충남	73	117	39	229	56	31	-	-	11	9	-	8	5	56	50	14	120	52.4	
전북	88	25	5	118	35	7	-	2	4	1	7	2	1	44	13	2	59	50.0	
전남	89	75	14	178	31	6	2	3	5	2	2	-	-	36	11	4	51	28.7	
경북	121	55	19	195	101	3	-	-	15	7	-	2	4	101	20	11	132	67.7	
경남	128	57	22	207	97	8	-	-	6	3	-	8	15	97	22	18	137	66.2	
제주	38	16	10	64	-	0	1	3	7	2	-	1	1	3	8	4	15	23.4	
계	2,181	1,641	667	4,489	968	250	40	47	174	162	84	100	188	1,099	524	390	2,013	44.8	

- 1995년부터 장애학생의 대학교육 기회 확대 및 직업재활을 도모하기 위해 특수교육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2009년도에 특수교육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을 실시한 대학은 전문대학 10개교와 4년제 대학교 80개교로 모두 90개교이며, 이를 통해 입학한 특수교육대상자는 561명임

<표 3·28> 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대학 입학생 수

(단위 : 교, 명)

학년도	전문대학		대학교		합계	
	실시대학	학생	실시대학	학생	실시대학	학생
1995	2	6	6	107	8	113
1996	2	16	16	201	18	217
1997	6	42	30	234	36	276
1998	6	57	39	298	45	355
1999	6	47	40	349	46	396
2000	9	55	48	313	57	368
2001	11	61	43	360	54	421
2002	15	194	46	420	61	614
2003	14	117	47	310	61	427
2004	24	115	49	309	73	424
2005	11	45	53	344	64	389
2006	10	31	63	388	73	419
2007	9	79	71	439	80	518
2008	8	100	74	460	82	560
2009	10	74	80	487	90	561

- 2009년 7월 현재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장애학생은 모두 1,118명임
- 2009년도에 교육대학 10개교, 국립사대 8개교, 사립사대 12개교, 총 30개 대학에서 장애학생 특별전형을 실시하였으며 216명의 장애학생이 특별전형 입학함

<표 3·29>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특수교육대상자 재학 및 특별전형 현황
(단위 : 교, 명)

구분	교육대학	국립사대	사립사대	계
재학생 중 장애학생	69	389	660	1,118
특별전형 입학생 ('09년)	34	62	120	216
특별전형 실시대학	10 (경인, 공주, 광주, 대구, 부산, 서울, 전주, 진주, 청주, 춘천)	8 (경북대, 경상대, 공주대, 부산대, 서울대, 전북대, 제주대, 충북대)	12 (건국대, 고려대, 단국대, 대구대, 동국대, 성균관대, 신라대, 우석대, 이화여대, 전주대, 조선대, 한양대)	30

- 2009년도 대학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도우미는 152개 대학에 1,612명을 배치하여 지원함

<표 3·30> 대학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 현황
(단위 : 교, 명)

구분	학교 수(교)	도우미 수(명)			
		1~3급	4급 이하	계	
일반 도우미	대학(대학원)	104	1,312	-	1,312
	전문대학	48	298	-	298
	소계	152	1,610	-	1,610
원격교육지원전문도우미	대학(대학원)	-	-	-	-
	전문대학	1	2	-	2
	소계	1	2	-	2
계	152 (중복지원교 제외)	1,612	-	1,612	

- ※ 일반 도우미 : 장애학생들의 이동이나 식사보조, 강의 및 시험 대필 등과 같이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증 없이도 수행 가능
- ※ 원격교육지원(전문도우미) : 타 대학 교수의 강의 내용을 웹 카메라와 스피커를 통하여 한국 재활복지대학 내의 원격강의 지원센터에 접속하여, 수화통역사 및 속기사가 내용을 전달 받으면 실시간으로 수화와 텍스트로 전환하여 학습자(청각장애인)에게 전달하는 강의 학습방법

□ 향후 과제

- 장애학생의 이동권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학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 장애학생의 교내활동 및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대학 내 특별지원위원회 및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확대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장애학생의 정보이용과 정보화교육을 위한 정보통신보조기기의 보급 확대
- 대학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 내실화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예산확보

(2) 장애성인교육 지원

□ 관련 법규

- 각급학교의 장은 장애인의 계속교육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조)
-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등은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하거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연구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령기 교육을 받지 못한 장애인을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4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전국 28개 장애성인 평생교육시설(야학기관)에서 360명의 교사가 657명의 학생을 지도하고 있으며 지원예산은 1,423백만원임
- 33개의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장애성인교육프로그램 운영 기관 지원 예산은 410백만원임
- 장애성인교육 운영 실태조사 및 운영 모형 개발 등의 연구개발도 함께 추진함

<표 3·31>

장애성인교육 지원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시·도	장애성인 평생교육시설(성인야학)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성인교육 프로그램 운영		
	설립형태 및 기관수	교사수	학생수	지원예산	운영 기관수	지원 예산	연구 개발예산
서울	민간단체 1	14	39	100	-	-	-
부산	민간단체 1	24	21	60	5	86	-
대구	민간단체 1	11	22	66	2	40	-
인천	민간단체 4	74	72	528	1	33	-
광주	사단법인부설 1						
	민간단체 1 개인설립 1	32	37	65	1	20	-
대전	사단법인 1	32	45	76	1	20	-
울산	민간단체 2	19	38	158	-	-	-
경기	-	-	-	-	-	-	-
강원	기관부설 1	13	9	21	1	20	-
충북	민간단체 3	29	231	158	1	20	-
충남	사단법인 1	13	10	57	9	99	30
전북	기관부설 1						
	개인설립 1	56	75	42	1	2	-
	민간단체 1						
전남	-	-	-	-	-	-	-
경북	-	-	-	-	1	20	-
경남	민간단체 6	31	43	78	10	50	-
제주	개인설립 1	12	15	14	-	-	-
계	28개	360	657	1,423	33	410	30

□ 향후 과제

- 장애성인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연구개발을 수행하여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 평생교육기관의 장애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추진 및 확대

5) 특수교육 실태조사

(1) 특수교육 실태조사

□ 관련 법규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계획·특수교육교원의 수급계획 등 특수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
- 특수교육 실태조사 사항(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8조)
 1. 특수교육대상자의 성·연령·장애유형·장애정도별 현황
 2. 특수교육기관 및 그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
 3.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현황
 4. 특수교육 지원을 위한 행정조직 및 지원 현황
 5. 특수교육재정의 확보·분배 활용 현황
 6.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성과 및 학교 졸업 후의 생활상태
 7.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및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운영 현황
 8.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보호자, 특수교육에 관한 전문가 등 특수교육 관련자의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사항

□ 현황 및 추진 실적

- 2008년에 특수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2009년 2월에 결과를 발표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표 3·32>

특수교육 실태조사 대상자 현황

(단위 : 명)

조사 부문	조사대상	응답 표본수
특수교육대상자 실태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	8,000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지원 실태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	8,000
미취학 학령기 장애인 실태	미취학 학령기 장애인보호자	1,196
특수교육 행·재정 지원 및 요구	특수학교(급) 관리자, 특수학교(급) 교사	1,000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및 기관 운영	특수학교(급) 관리자, 특수학교(급) 교사	1,000
특수교육관련인 만족도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 특수학교(급) 관리자, 특수학교(급) 교사	9,000

- 2008년도 특수교육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특수교육요구학생 추정 수는 다음과 같음

<표 3·33>

특수교육요구학생 추정 수

(단위 : 명, %)

학교급	학령 인구 수	특수교육대상학생	취학 특수교육 요구학생	미취학 특수교육 요구학생	특수교육요구학생 추정 수
유	1,437,837	3,236	823	5,386	9,445(0.66)
초	3,766,997	33,974	3,573	2,831	40,378(1.07)
중	2,125,011	16,833	1,413	812	19,058(0.90)
고	2,078,779	17,441	471	2,258	20,170(0.97)
계	9,408,624	71,484	6,280	11,287	89,051(0.95)

- 2008년도 특수교육 실태조사 결과 특수교육요구학생 수는 전체 학령인구 9,408,624명 중 89,051명으로 0.9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89,051명 중 77,764명은 취학 학생임. 이 중 71,484명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특수교육 지원을 받고 있으며, 6,280명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으나, 특수교육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으로 조사되었고, 11,287명은 미취학아동이면서 특수교육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으로 조사됨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중 가장 많이 제공받고 있는 치료지원은 언어치료 (22.1%)이며 가장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영역은 여가활동 서비스 (23.1%)로 나타남
- 교육과정 운영 실태조사 결과, 유치원은 주로 유치원 교육과정과 특수학교 기본교육과정을 혼용하여 사용하며 기본생활습관 지도에 중점을 두는 반면, 초·중·고 특수학교는 특수학교 기본교육과정을 주로 활용하고 기능적 생활중심교육에 비중을 두는 것으로 나타남
- 특수학교(급)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방법은 관찰, 지필평가 등으로 조사되었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 및 직업교육 실시 형태로는 교내 작업활동을 위주로 실시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수교육 행·재정 실태를 조사 결과, 학교 교육이 질적으로 향상되기 위해서는 특수학교(급) 재정규모의 확충이 필요하고, 효율적인 교과지도를 위한 교재·교구 구입 예산 규모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관리자와 교사,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 보호자를 대상으로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특수학교(급)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와 재정 지원,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통합교육, 학업성취도 평가 방법 등에 대해 대부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지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향후 과제

- 2011년에 실시될 특수교육실태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수교육요구 학생 선별을 위한 조작적 정의와 선별도구 및 진단 지침서에 관한 보완이 필요함
- 미취학 특수교육 요구학생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 모집단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한 부처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방안 수립이 필요함

(2)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 및 평가

□ 관련 법규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

□ 현황 및 실적

- 대학의 자체적인 진단과 개선을 통한 장애학생의 교육여건 개선 유도를 위해 2008년도에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평가 실시 및 2009년 2월 결과 발표
- 평가대상은 장애학생이 1명 이상 재학하고 있는 4년제 및 전문대학 192개교 (분교 11개교 포함)임
 - 4년제 대학교 : 133개교, 교육대학 : 5개교, 산업대학 : 10개교, 전문대학 : 44개교
- 평가분야는 선발, 교수·학습, 시설·설비의 3개 영역으로 평가함

<표 3·34>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평가 영역

평가영역	평가항목	비율
선발	특별전형 실시 등 3개	6%
교수·학습	학습권 보장 장기발전계획 등 22개	44%
시설·설비	매개시설 등 29개	50%
3개 영역	54개 항목	100%

- 평가대상 대학에서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를 토대로 서면평가에 이어 현지 방문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를 산출함
- 평가방법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로 구분하여 평가영역별로 최우수, 우수, 보통, 개선요망의 4단계 등급으로 평가함

- 최우수 20개 대학(10.4%) : 나사렛대학교, 한국재활복지대학, 대구대학교, 삼육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일장신대학교, 강남대학교, 단국대학교(천안), 서강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숭실대학교, 서울대학교, 우석대학교, 단국대학교(죽전), 제주대학교, 경희대학교(서울), 충북대학교, 명지대학교(용인), 이화여자대학교
- 우수 20개 대학(10.4%) : 백석대학교, 한림대학교, 충남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전주대학교, 신라대학교, 건양대학교, 가톨릭대학교, 한양대학교 (서울), 고려대학교(서울), 동명대학교, 전남대학교(여수), 목원대학교, 연세대학교(서울), 한경대학교, 전남대학교(광주), 한국외국어대학교, 경희대학교(국제), 그리스도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 보통 : 40개 대학(20.9%)
- 개선요망 : 112개 대학(58.3%)
 - ※ 2005년도(157개교) : 최우수 8개교(5.1%), 우수 17개교(10.8%), 보통36개교(22.9%), 개선요망 96개교(61.2%)
 - ※ 2003년도(186개교) : 최우수 2개교(1.1%), 우수 14개교(7.5%), 보통 31개교(16.7%), 개선요망 139개교(74.7%)
- 2008년도 평가결과, 대학 전체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59.74점으로 2005년도 56.50점보다 3.24점이 상승
 - '선발', '교수·학습' 영역은 향상되었으나, '시설·설비' 영역은 약간 하락하였으며, 이는 '08년 평가대상이 4년제 대학교인데 비해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복지지원이 미비한 전문대학(44개교)이 포함된 결과임

□ 향후 과제

- 국(공)립 대학의 시설·설비 부문 현황을 분석 후, 지속적인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을 권고하고 국(공)립대가 우선적으로 편의시설 개선 등의 장애물 없는 환경을 조성토록 유도
- 2011년도 평가대상 대학을 전국의 모든 4년제 및 전문대학으로 확대 추진하고 대학의 장애학생 교육복지 개선 풍토 조성

2. 학령기 아동의 통합교육 내실화

1)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 관련 법규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을 배치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시·도별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순회교육 지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유치원 193명, 초등학교 944명, 중학교 487명, 고등학교 210명 총 1,834명의 학생이 순회교육 지원을 받고 있음

<표 3·35>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 지원 (단위 : 명)

시·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전체	여	전체	여	전체	여	전체	여	전체	여
서울	-	-	-	-	-	-	-	-	-	-
부산	-	-	10	2	12	5	30	10	52	17
대구	-	-	5	2	1	-	-	-	6	2
인천	12	4	24	9	8	5	4	1	48	19
광주	8	-	15	5	-	-	-	-	23	5
대전	-	-	-	-	-	-	-	-	-	-
울산	2	2	35	15	5	-	8	1	50	18
경기	17	7	56	17	17	7	-	-	90	31
강원	6	4	43	16	45	19	6	1	100	40
충북	16	4	100	45	38	21	10	5	164	75
충남	30	6	89	31	70	22	34	9	223	68
전북	13	6	159	77	76	26	11	5	259	114
전남	18	8	66	25	61	22	19	12	164	67
경북	20	6	126	45	67	23	55	12	268	81
경남	35	11	119	47	61	22	5	1	220	86
제주	16	6	97	32	26	11	28	17	167	66
총계	193	64	944	368	487	183	210	74	1,834	689

□ 향후 과제

-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여 순회교육 등 지원 확대 추진

2) 일반교육교원의 통합교육 책무성 강화

(1) 통합교육 현황

□ 관련 법규

-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수업참여 배제 및 교내외 활동 참여 배제,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통합교육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일반학교 교원에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특수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일반학교 교원에 대하여는 특수교육과 관련된 직무연수 과정을 개설·운영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5조)
- 통합교육을 위한 학급을 직접 담당할 경력에 대해 선택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음(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4항3호)

□ 현황 및 추진실적

- 현재 특수교육은 전 세계적으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분리교육보다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일반학생들과 함께 일반학급에서 교육을 받는 통합교육을 지향하고 있음

- 2009년 4월 기준 통합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42,117명의 교원 중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589명(1.4%), 60시간 이상 연수자는 6,947명(16.5%), 30시간 이상 연수 이수자는 3,871명(9.2%), 연수 미이수자는 30,710명(72.9%)임

<표 3·36> 시·도별 통합학급 담당교사 현황

(단위 : 명, %)

시·도	특수학교교사자격 추가 소지자	60시간이상 연수	30시간 이상연수(30~59시간)	미이수	계
서울	29 (0.4)	101 (1.6)	548 (8.4)	5,835 (89.6)	6,513
부산	65 (2.0)	505 (15.4)	1,214 (37.0)	1,499 (45.7)	3,283
대구	23 (1.0)	295 (13.2)	81 (3.6)	1,833 (82.1)	2,232
인천	47 (2.2)	901 (41.4)	193 (8.9)	1,034 (47.5)	2,175
광주	15 (1.4)	197 (17.9)	9 (0.8)	878 (79.9)	1,099
대전	20 (1.2)	123 (7.4)	40 (2.4)	1,485 (89.0)	1,668
울산	21 (1.6)	327 (25.7)	15 (1.2)	910 (71.5)	1,273
경기	107 (1.2)	2,196 (23.6)	897 (9.7)	6,086 (65.5)	9,286
강원	17 (1.2)	140 (9.9)	67 (4.7)	1,192 (83.2)	1,416
충북	28 (1.7)	544 (33.4)	9 (0.6)	1,049 (64.4)	1,630
충남	63 (2.6)	643 (26.5)	39 (1.6)	1,680 (69.3)	2,425
전북	20 (1.4)	55 (4.0)	5 (0.4)	1,311 (94.2)	1,391
전남	66 (3.5)	251 (13.2)	12 (0.6)	1,570 (82.7)	1,899
경북	20 (0.9)	297 (13.7)	616 (28.4)	1,235 (57.0)	2,168
경남	46 (1.4)	313 (9.6)	97 (3.0)	2,814 (86.1)	3,270
제주	2 (0.5)	59 (15.2)	29 (7.5)	299 (76.9)	389
총 계	589 (1.4)	6,947 (16.5)	3,871 (9.2)	30,710 (72.9)	42,117

- 2009년 현재 통합학급 담당교사에게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은 인천, 울산 2개 지역임

<표 3·37> 시·도별 통합학급 담당교사 승진 가산점 부여 현황

시·도	월평정점	가산점 부여 대상
인천	0.0053	유·초·중·고 통합학급 교사
울산	0.0053	유·초 통합학급 교사

□ 향후 과제

-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특수교육 관련 60시간 직무연수 이수 실시 확대
- 통합학급 담당교원 및 통합학급 지원 추진

(2) 일반교육교원 통합교육 관련 연수

□ 관련 법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8조)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통합교육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일반학교 교원에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특수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일반학교 교원에 대하여는 특수교육과 관련된 직무연수 과정을 개설·운영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5조)
-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 받은 일반학교의장은 교육과정의 조정, 보조인력의 지원, 학습보조기기의 지원,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
- 일반교사 양성과정에서 이수해야 하는 교직과정의 세부 이수기준 중 교직소양 영역에 '특수아동의 이해' 과목을 포함하여 2009년부터 시행함(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7-161호, 2008.1.8)

□ 현황 및 추진실적

- 2009년 일반교원의 특수교육 연수과정 이수 현황은 607개 연수과정을 46,634 명이 이수함

<표 3·38> 일반교원의 특수교육 연수과정 이수 인원 (단위 : 개, 명)

시·도	연수과정(직무)						계	
	30시간 미만		30이상 60시간 미만		60시간 이상		과정수	참여인원
	과정수	참여인원	과정수	참여인원	과정수	참여인원		
서울	1	80	4	1,204	22	3,226	27	4,510
부산	3	249	10	1,204	12	948	25	2,401
대구	4	379	3	36	1	1,000	8	1,415
인천	18	1,354	1	39	9	1,497	28	2,890
광주	8	850	8	780	9	562	25	2,192
대전	2	6	3	90	2	382	7	478
울산	3	815	-	-	1	510	4	1,325
경기	32	623	19	550	7	7,478	58	8,651
강원	2	255	7	320	19	1,040	28	1,615
충북	9	703	5	73	12	2,161	26	2,937
충남	25	2,519	20	95	13	1,423	58	4,037
전북	31	1,109	7	70	71	2,507	109	3,686
전남	23	2,340	1	30	1	200	25	2,570
경북	28	2,247	4	1,018	6	478	38	3,743
경남	20	1,493	2	186	9	1,503	31	3,182
제주	5	781	37	80	68	141	110	1,002
계	214	15,803	131	5,775	262	25,056	607	46,634

□ 향후 과제

- 일반교육교원의 특수교육 소양 함양 및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일반교육교원 연수과정에 특수교육 관련 강좌 개설 확대
- 특수교육 연수과정 이수 일반교육교원 수 확대

(3) 통합교육 시범학교 및 통합교육 연구회 운영

□ 관련 법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가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입학절차, 교육과정 마련 등 통합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초·중등교육법 제59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2009년 통합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 운영, 교재·교구 개발·적용 등을 위해 전국 59개 학교를 통합교육 시범학교로 지정·운영하고 있음

<표 3·39> 시도별 통합교육 시범학교 운영현황 (단위 : 교, 백만원)

시·도	지정별			계	지원예산액
	과정	시·도	지역		
서울	특수학교	1	-	1	10
부산	초등학교	2	-	2	20
대구	특수, 초등학교	2	4	6	24
인천	특수, 초, 중학교	3	-	3	17
광주	-	-	-	-	-
대전	-	-	-	-	-
울산	특수, 초등학교	2	-	2	-
경기	초등학교	2	-	2	14
강원	특수, 초등학교	3	6	9	109
충북	특수, 유, 초, 중, 고	18	-	18	54
충남	유, 초등학교	2	2	4	14
전북	특수, 유, 중학교	5	-	5	25
전남	초등학교	1	-	1	5
경북	특수학교	1	-	1	5
경남	특수학교	1	-	1	12
제주	특수학교, 초등학교	4	-	4	17
계	-	47	12	59	326

- 통합교육 연구를 위한 일반교사 연구회는 시범운영 단계로 모두 19개가 있으며 466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음

<표 3·40> 시·도별 일반교사 통합교육 연구회 운영 현황

(단위 : 교, 백만원)

시·도	일반교사 연구회 수	총회원 수	지원예산
서울	-	-	-
부산	3	18	9
대구	1	92	2
인천	-	-	-
광주	2	14	20
대전	-	-	-
울산	-	-	-
경기	-	-	-
강원	-	-	-
충북	1	21	1
충남	1	40	1
전북	9	196	2
전남	-	-	-
경북	-	-	-
경남	2	85	5
제주	-	-	-
계	19	466	40

□ 향후 과제

- 통합교육 확산을 위한 교육청별 통합교육 시범학교 지정·운영의 확대 및 지원강화
- 통합교육의 보편화 및 내실화를 위한 통합교육 시범학교 운영결과의 일반화 강화
- 일반교사 통합교육 연구회 구성 및 운영 지원 확대

3) 특수교육교원의 통합교육 책무성 강화

(1) 특수교육 담당교원 양성

□ 관련 법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특수교육교원 양성 및 연수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특수교육 교사 양성과정별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이 강화됨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무시험검정 기준 :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 과정별(유치원, 초등, 중등, 체육, 직업교육) 전공과목 30학점, 교직과목 22학점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무시험검정 기준 :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 과정별(유치원, 초등, 중등, 체육, 직업교육) 42학점, 교직과목 22학점,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기타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 특수교육 교사 자격증은 특수교육 교원 양성대학을 졸업하는 경우 및 일반 교육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육대학원이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한 경우에 부여됨
- 2009년 현재 특수교육 교사 양성과정을 설치한 대학은 36개교이고, 정원은 1,536명임
- 2009년 현재 특수교육대학원은 3개로 입학정원은 270명이고, 특수교육 관련 전공 설치 교육대학원은 42개교임(중복전공 6개교 제외)

<표 3·41>

특수교육 교원 양성대학 및 입학정원

(단위 : 명)

순	설립별	학교명	계열	학과명	입학정원	자격종별
1	국립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60	특수학교교사
2	"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유아특수교육과	15	특수학교교사(유치원)
				중등특수교육과	20	특수학교교사
3	"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20	특수학교교사
4	"	창원대학교	교육과	특수교육과	20	특수학교교사
5	"	한국체육대학교	교육과	특수체육교육과	30	특수학교교사
6	사립	가야대학교	교육과	초등특수교육과	40	특수학교교사(초등)
				특수체육교육과	20	특수학교교사
7	"	가톨릭대학교	교육과	특수교육과	40	특수학교교사(중등)
8	"	강남대	교육과	특수교육과	40	특수학교교사
				초등특수교육과	30	특수학교교사(초등)
9	"	건양대	교육과	중등특수교육과	20	특수학교교사(중등)
				초등특수교육과	30	특수학교교사(초등)
10	"	경동대	교육과	중등특수교육과	20	특수학교교사(중등)
11	"	경주대	교육과	특수체육교육과	20	특수학교교사(중등)
12	"	광주여대	교육과	초등특수교육과	30	특수학교교사(초등)
				중등특수교육과	20	특수학교교사(중등)
13	"	극동대학교	교육과	초등특수교육과	20	특수학교교사(초등)
				중등특수교육과	20	특수학교교사(중등)
14	"	나사렛대학교	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35	특수학교교사(유치원)
				초등특수교육과	20	특수학교교사(초등)
				중등특수교육과	20	특수학교교사(중등)
15	"	남부대학교	교육과	초등특수교육과	15	특수학교교사(초등)
			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15	특수학교교사(유치원)
16	"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40	특수학교교사
17	"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유아특수교육과	35	특수학교교사(유치원)
				초등특수교육과	40	특수학교교사(초등)
				중등특수교육과	40	특수학교교사(중등)

Ⅲ. 2009년도 추진 실적

순	설 립 별	학 교 명	계열	학과명	입학정원	자격종별
18	사립	대구한의대	교육과	중등특수교육과	20	특수학교교사(중등)
19	"	대불대학교	교육과	특수교육과	40	특수학교교사
20	"	대전대학교	교육과	중등특수교육과	20	특수학교교사(중등)
21	"	명신대학교	교육과	초등특수교육과	20	특수학교교사(초등)
22	"	백석대학교	교육과	유이특수교육과	40	특수학교교사(유치원)
				특수교육과	60	특수학교교사
				특수체육교육과	40	특수학교교사(중등)
23	"	부산장신대	교육과	특수교육과	20	특수학교교사
24	"	순천향대학교	교육과	특수교육과	30	특수학교교사
25	"	영남대학교	사범대학	특수체육교육과	30	특수학교교사(중등)
26	"	영동대학교	교육과	초등특수교육과	40	특수학교교사(초등)
				중등특수교육과	20	특수학교교사(중등)
27	"	용인대학교	교육과	특수체육교육과	30	특수학교교사(중등)
28	"	우석대학교	사범대학	유이특수교육과	30	특수학교교사(유치원)
				특수교육과	35	특수학교교사
29	"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중등특수교육과	20	특수학교교사(중등)
30	"	위덕대학교	교육과	초등특수교육과	40	특수학교교사(초등)
			교육과	중등특수교육과	20	특수학교교사(중등)
31	"	이화여대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42	특수학교교사
32	"	인제대학교	교육과	특수교육과	30	특수학교교사
33	"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30	특수학교교사
34	"	중부대학교	교육과	유이특수교육과	20	특수학교교사(유치원)
				초등특수교육과	20	특수학교교사(초등)
				중등특수교육과	20	특수학교교사(중등)
				특수체육교육과	20	특수학교교사(중등)
35	"	한국국제대	교육과	초등특수교육과	30	특수학교교사(초등)
				특수체육교육과	20	특수학교교사(중등)
36	"	한신대학교	정보과학대학	특수체육학과	4	특수학교교사(중등)
계					1,536	

<표 3·42> 특수교육대학원 설치 대학 현황

(단위 : 명)

설치교	설립별	전공	입학정원
공주대학교	국립	특수교육행정, 유아특수교육, 초등특수교육, 중등특수교육 특수직업교육, 특수체육교육, 치료특수교육(계 7전공)	70
단국대학교	사립	유아특수교육, 초등특수교육, 중등특수교육, 언어치료, 물 리작업치료, 심리치료교육(계 6전공)	100
대구대학교	사립	시각장애교육, 청각장애교육, 정신지체교육, 지체부자유교 육, 학습장애교육, 유아특수교육, 초등특수교육(계 7전공)	100
계		3개교 20전공	270

<표 3·43> 특수교육 관련 전공 설치 교육대학원 현황

(단위 : 명)

전공	교육대학원 설치교	입학정원
유아특수교육(5)	공주대, 부산대, 강남대, 광신대, 우석대	입학정원은 각대학 교육대학원 총정원으로 인가되어 있음
초등특수교육(11)	경인교대, 공주교대, 광주교대, 서울교대, 진주교대, 청주교대, 춘 천교대, 대구교대, 공주대, 광신대, 위덕대	
중등특수교육(1)	공주대	
특수교육(28)	부산대, 전남대, 창원대, 한국교원대, 가야대, 가톨릭대, 강남대, 고신대, 광주여대, 나사렛대, 대구대, 대불대, 대진대, 백석대, 성 공회대, 세종대, 순천향대, 아주대, 영남대, 용인대, 우석대, 이화 여대, 인제대, 전주대, 조선대, 중부대, 평택대, 한세대	
직업특수교육(1)	가톨릭대	
특수체육교육(2)	한국체육대, 공주대	
계	42개교(중복전공 6개교 제외)	

□ 향후 과제

- 특수교육 교사 양성과정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강화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일반교육 교사를 대상으로 특수교육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교육대학원 특수교육 전공과정의 교육과정 강화 및 전공 교수 확보

(2) 특수교육 담당교원 현직연수

□ 관련 법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8조)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통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특수교육교원에 대하여 일반교과 교육에 관한 직무연수 과정을 개설·운영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5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특수교육 담당교원의 자질 함양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현직연수는 국립특수교육원, 시·도교육청(산하기관인 시·도교육연수원 포함) 및 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국립특수교육원은 출석(집합)연수 혹은 원격교육연수를 통해 특수교사 자격연수(유·초등·부전공과목), 직무연수, 해외연수 및 기타 일반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과 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등은 특수교사 자격연수(초·중등)와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음
- 2009학년도 국립특수교육원, 시·도교육청, 특수교육양성대학을 통한 시·도교육청 특수교육 담당교원 연수 실적은 모두 602개 연수과정을 15,741명이 이수하였음

<표 3·44>

특수교육교원 연수 현황

(단위 : 개, 명, 천원)

시·도	국가(국립특수교육원 등)		시·도교육청		특수교육 교사양성대학		계	
	과정수	참여인원	과정수	참여인원	과정수	참여인원	과정수	참여인원
서울	14	199	9	1,524	2	89	25	1,812
부산	14	288	5	1,399	2	39	21	1,726
대구	16	81	1	40	1	550	18	671
인천	2	119	18	1,467	-	-	20	1,586
광주	9	46	8	626	3	53	20	725
대전	33	306	4	50	6	25	43	381
울산	22	74	5	191	3	3	30	268
경기	48	1,248	9	889	14	88	71	2,225
강원	22	174	5	199	3	28	30	401
충북	17	320	23	814	3	72	43	1,206
충남	45	263	44	1,197	19	67	108	1,527
전북	35	305	23	534	12	80	70	919
전남	4	38	8	360	2	16	14	414
경북	19	164	4	860	5	14	28	1,038
경남	18	115	6	185	3	58	27	358
제주	17	240	13	215	4	29	34	484
합계	335	3,980	185	10,550	82	1,211	602	15,741

- 특수교육교원 연구회는 243개이며 11,275명의 회원들이 특수교육관련 연구활동을 수행함

<표 3·45>

특수교육교원 연구회 운영 현황

(단위 : 개, 명, 백만원)

시·도	특수교육교원 연구회 수	회원수	지원예산
서울	8	1,813	15
부산	33	370	27
대구	5	402	17
인천	11	412	9
광주	12	213	34
대전	4	405	18
울산	1	128	2
경기	29	1,314	39
강원	19	1,002	41
충북	30	490	25
충남	22	984	32
전북	10	1,196	37
전남	25	577	21
경북	10	790	50
경남	23	958	29
제주	1	221	2
계	243	11,275	398

□ 향후과제

- 특수교육교원들의 전문성 제고 및 자질 함양을 위한 연수기회 확대와 연수 주기 단축
- 특수교육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일반교과 연수 제공 추진
- 특수교육교원 연수과정의 질 제고 및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연수과정의 개선 및 다양화 추진

- 특수교육교원의 균형적인 자격연수 기회 제공을 위하여 특수교육 희소과목 담당교사의 자격연수는 관련 교과 연수참여 인정

(3) 장애학생 학력평가제 및 평가조정제 실시

□ 관련 법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개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
-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
- 개별화교육계획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적사항과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및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
- 교육책임자는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여야 함(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일반학교 장애학생 학업성취도 평가 모형 개발 연구학교 6개교 운영
- 시각장애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는 447개교이며 이 중 학력평가지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실시하는 학교는 349개교, 대안평가를 실시하는 학교는 68개교, 시각장애학생을 제외하는 학교는 12개교임
- 시각장애학생에 대한 평가조정을 실시하는 학교는 160개교, 시각장애학생 평가조정의 근거를 학칙으로 마련한 학교는 162개교임

<표 3·46>

시각장애학생 학력평가 실시 현황

(단위 : 교, %)

시·도	시각장애 학생이 재학중인 학교	학력평가 실시 현황						평가조정제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실시하는 학교		대안평가를 실시하는 학교		장애학생을 제외하는 학교		시각장애학생에 대한 평가조정 실시 학교		평가조정의 근거를 학칙에 마련한 학교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서울	65	52	80.0	11	16.9	4	6.2	35	53.8	36	55.4
부산	38	12	31.6	7	18.4	-	-	14	36.8	5	13.2
대구	33	32	97.0	-	-	-	-	8	24.2	5	15.2
인천	11	9	81.8	2	18.2	-	-	2	18.2	1	9.1
광주	8	5	62.5	2	25.0	1	12.5	2	25.0	3	37.5
대전	38	31	81.6	7	18.4	-	-	14	36.8	21	55.3
울산	17	13	76.5	4	23.5	-	-	4	23.5	6	35.3
경기	92	66	71.7	20	21.7	6	6.5	35	38.0	60	65.2
강원	13	13	100	-	-	-	-	3	23.1	-	-
충북	13	12	92.3	1	7.7	-	-	4	30.8	3	23.1
충남	29	23	79.3	6	20.7	-	-	13	44.8	5	17.2
전북	6	5	83.3	-	-	1	16.7	6	100	6	100
전남	3	3	100	-	-	-	-	3	100	1	33.3
경북	28	27	96.4	1	3.6	-	-	4	14.3	1	3.6
경남	43	37	86.0	6	14.0	-	-	11	25.6	9	20.9
제주	10	9	90.0	1	10.0	-	-	2	20.0	-	-
계	447	349	78.1	68	15.2	12	2.7	160	35.8	162	36.2

- 청각장애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는 1,350개교이며 이 중 학력평가지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실시하는 학교는 1,106개교, 대안평가를 실시하는 학교는 193개교, 시각장애학생을 제외하는 학교는 20개교임
- 시각장애학생에 대한 평가조정을 실시하는 학교는 376개교, 시각장애학생 평가조정의 근거를 학칙으로 마련한 학교는 321개교임

<표 3·47>

청각장애학생 학력평가 실시 현황

(단위 : 교, %)

시·도	청각장애학생이 재학중인 학교	학력평가 실시 현황						평가조정제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실시하는 학교		대안평가를 실시하는 학교		장애학생을 제외하는 학교		청각장애학생에 대한 평가조정 실시 학교		평가조정의 근거를 학칙에 마련한 학교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서울	214	188	87.9	29	13.6	4	1.9	85	39.7	79	36.9
부산	72	36	50.0	8	11.1	-	-	19	26.4	9	12.5
대구	97	91	93.8	4	4.1	4	4.1	26	26.8	33	34.0
인천	55	54	98.2	1	1.8	-	-	7	12.7	3	5.5
광주	60	51	85.0	7	11.7	2	3.3	7	11.7	3	5.0
대전	81	66	81.5	14	17.3	1	1.2	40	49.4	35	43.2
울산	61	49	80.3	12	19.7	-	-	12	19.7	16	26.2
경기	340	274	80.6	60	17.6	6	1.8	92	27.1	93	27.4
강원	36	27	75.0	7	19.4	2	5.6	4	11.1	-	-
충북	52	45	86.5	6	11.5	1	1.9	20	38.5	13	25.0
충남	66	42	63.6	24	36.4	-	-	13	19.7	5	7.6
전북	28	15	53.6	1	3.6	-	-	3	10.7	4	14.3
전남	10	10	100	-	-	-	-	10	100	6	60.0
경북	56	53	94.6	3	5.4	-	-	13	23.2	4	7.1
경남	116	99	85.3	17	14.7	-	-	24	20.7	18	15.5
제주	6	6	100	-	-	-	-	1	16.7	-	-
계	1,350	1,106	81.9	193	14.3	20	1.5	376	27.9	321	23.8

- 지체장애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는 2,726개교이며 이 중 학력평가지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실시하는 학교는 2,329개교, 대안평가를 실시하는 학교는 328개교, 지체장애학생을 제외하는 학교는 109개교임
- 지체장애학생에 대한 평가조정을 실시하는 학교는 497개교, 지체장애학생 평가조정의 근거를 학칙으로 마련한 학교는 394개교임

<표 3·48>

지체장애학생 학력평가 실시 현황

(단위 : 교, %)

시·도	지체장애학생이 재학중인 학교	학력평가 실시 현황						평가조정제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실시하는 학교		대안평가를 실시하는 학교		장애학생을 제외하는 학교		지체장애학생에 대한 평가조정 실시 학교		평가조정의 근거를 학칙에 마련한 학교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서울	387	345	89.1	62	16.0	30	7.8	96	24.8	69	17.8
부산	117	74	63.2	16	13.7	-	-	19	16.2	8	6.8
대구	158	151	95.6	5	3.2	5	3.2	26	16.5	21	13.3
인천	117	108	92.3	9	7.7	-	-	7	6.0	3	2.6
광주	66	58	87.9	4	6.1	4	6.1	4	6.1	-	-
대전	151	127	84.1	24	15.9	-	-	54	35.8	45	29.8
울산	109	85	78.0	38	34.9	-	-	38	34.9	31	28.4
경기	654	535	81.8	78	11.9	41	6.3	106	16.2	120	18.3
강원	108	85	78.7	2	1.9	21	19.4	7	6.5	4	3.7
충북	115	101	87.8	10	8.7	4	3.5	19	16.5	18	15.7
충남	174	129	74.1	43	24.7	2	1.1	27	15.5	20	11.5
전북	79	74	93.7	3	3.8	2	2.5	16	20.3	16	20.3
전남	40	38	95.0	2	5.0	-	-	36	90.0	7	17.5
경북	171	161	94.2	10	5.8	-	-	14	8.2	5	2.9
경남	265	244	92.1	21	7.9	-	-	27	10.2	27	10.2
제주	15	14	93.3	1	6.7	-	-	1	6.7	-	-
계	2,726	2,329	85.4	328	11.1	109	4.0	497	18.2	394	14.5

- 정신지체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는 5,947개교이며 이 중 학력평가지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실시하는 학교는 4,113개교, 대안평가를 실시하는 학교는 1,209개교, 정신지체학생을 제외하는 학교는 761개교임
- 정신지체학생에 대한 평가조정을 실시하는 학교는 865개교, 정신지체학생 평가조정의 근거를 학칙으로 마련한 학교는 451개교임

<표 3·49>

정신지체학생 학력평가 실시 현황

(단위 : 교, %)

시·도	정신지체학생이 재학중인 학교	학력평가 실시 현황						평가조정제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실시하는 학교		대안평가를 실시하는 학교		장애학생을 제외하는 학교		정신지체학생에 대한 평가조정 실시 학교		평가조정의 근거를 학칙에 마련한 학교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서울	695	529	76.1	141	20.3	172	24.7	117	16.8	66	9.5
부산	241	132	54.8	53	22.0	-	-	39	16.2	17	7.1
대구	233	213	91.4	12	5.2	20	8.6	16	6.9	11	4.7
인천	264	241	91.3	23	8.7	-	-	15	5.7	2	0.8
광주	199	144	72.4	28	14.1	27	13.6	28	14.1	4	2.0
대전	193	133	68.9	51	26.4	9	4.7	61	31.6	51	26.4
울산	150	109	72.7	86	57.3	-	-	86	57.3	37	24.7
경기	1,221	810	66.3	219	17.9	192	15.7	170	13.9	126	10.3
강원	310	160	51.6	51	16.5	99	31.9	15	4.8	5	1.6
충북	319	229	71.8	66	20.7	24	7.5	41	12.9	21	6.6
충남	449	309	68.8	120	26.7	20	4.5	41	9.1	23	5.1
전북	269	113	42.0	80	29.7	76	28.3	33	12.3	32	11.9
전남	378	202	53.4	176	46.6	-	-	134	35.4	29	7.7
경북	385	355	92.2	30	7.8	-	-	22	5.7	5	1.3
경남	548	372	67.9	69	12.6	107	19.5	46	8.4	22	4.0
제주	93	62	66.7	4	4.3	15	16.1	1	1.1	-	-
계	5,947	4,113	69.2	1,209	20.3	761	12.8	865	14.5	451	7.6

- 정서장애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는 2,258개교이며 이 중 학력평가시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실시하는 학교는 1,588개교, 대안평가를 실시하는 학교는 438개교, 정서장애학생을 제외하는 학교는 310개교임
- 정서장애학생에 대한 평가조정을 실시하는 학교는 371개교, 정서장애학생 평가조정의 근거를 학칙으로 마련한 학교는 247개교임

<표 3·50>

정서장애학생 학력평가 실시 현황

(단위 : 교, %)

시·도	정서장애학생이 재학중인 학교	학력평가 실시 현황						평가조정제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실시하는 학교		대안평가를 실시하는 학교		장애학생을 제외하는 학교		정서장애학생에 대한 평가조정 실시 학교		평가조정의 근거를 학칙에 마련한 학교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서울	453	350	77.3	81	17.9	108	23.8	85	18.8	49	10.8
부산	132	63	47.7	32	24.2	-	-	28	21.2	9	6.8
대구	125	114	91.2	4	3.2	12	9.6	7	5.6	7	5.6
인천	126	114	90.5	12	9.5	-	-	6	4.8	1	0.8
광주	64	40	62.5	11	17.2	13	20.3	11	17.2	3	4.7
대전	106	66	62.3	32	30.2	8	7.5	43	40.6	36	34.0
울산	70	53	75.7	33	47.1	-	-	33	47.1	19	27.1
경기	505	323	64.0	104	20.6	78	15.4	90	17.8	80	15.8
강원	86	47	54.7	21	24.4	18	20.9	8	9.3	3	3.5
충북	81	65	80.2	13	16.0	3	3.7	10	12.3	7	8.6
충남	104	66	63.5	30	28.8	8	7.7	9	8.7	5	4.8
전북	69	26	37.7	18	26.1	25	36.2	5	7.2	9	13.0
전남	19	8	42.1	11	57.9	-	-	10	52.6	5	26.3
경북	105	97	92.4	8	7.6	-	-	7	6.7	2	1.9
경남	196	139	70.9	25	12.8	32	16.3	18	9.2	12	6.1
제주	17	17	100	3	17.6	5	29.4	1	5.9	-	-
계	2,258	1,588	70.3	438	19.4	310	13.7	371	16.4	247	10.9

- 기타 장애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는 3,475개교이며 이 중 학력평가지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실시하는 학교는 2,806개교, 대안평가를 실시하는 학교는 467개교, 장애학생을 제외하는 학교는 228개교임
- 기타장애학생에 대한 평가조정을 실시하는 학교는 410개교, 기타장애학생 평가조정의 근거를 학칙으로 마련한 학교는 280개교임

<표 3·51> 기타 장애학생 학력평가 실시 현황 (단위 : 교, %)

시·도	기타장애학생이 재학중인 학교	학력평가 실시 현황						평가조정제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실시하는 학교		대안평가를 실시하는 학교		장애학생을 제외하는 학교		기타장애학생에 대한 평가조정 실시 학교		평가조정의 근거를 학칙에 마련한 학교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서울	422	377	89.3	62	14.7	32	7.6	57	13.5	27	6.4
부산	220	137	62.3	33	15.0	-	-	35	15.9	15	6.8
대구	189	173	91.5	8	4.2	11	5.8	14	7.4	6	3.2
인천	108	89	82.4	5	4.6	14	13.0	2	1.9	1	0.9
광주	79	64	81.0	9	11.4	6	7.6	7	8.9	-	-
대전	97	72	74.2	21	21.6	4	4.1	31	32.0	26	26.8
울산	127	98	77.2	53	41.7	-	-	53	41.7	33	26.0
경기	546	426	78.0	73	13.4	47	8.6	64	11.7	82	15.0
강원	297	202	68.0	31	10.4	64	21.5	10	3.4	2	0.7
충북	166	140	84.3	15	9.0	11	6.6	19	11.4	20	12.0
충남	378	286	75.7	75	19.9	17	4.5	42	11.1	20	5.3
전북	82	41	50.0	29	35.4	12	14.6	12	14.6	22	26.8
전남	61	48	78.7	13	21.3	-	-	26	42.6	5	8.2
경북	263	251	95.4	12	4.6	-	-	12	4.6	2	0.8
경남	390	364	93.3	26	6.7	-	-	25	6.4	19	4.9
제주	50	38	76.0	2	4.0	10	20.0	1	2.0	-	-
계	3,475	2,806	80.7	467	13.4	228	6.6	410	11.8	280	8.1

□ 향후 과제

-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른 학습요구 파악 및 지원 방안 수립
- 특수학교(급) 대상 학력평가제 및 평가조정제 시범 운영 추진
- 학력평가제 및 평가조정제 연구학교 운영 결과 보급
- 학력평가제 및 평가조정제 시행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 학업성취도 제고

(4) 장애인식 개선

□ 관련법규

-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함(교육기본법 제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입학절차, 교육과정 등을 마련하는 등 통합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초·중등교육법 제59조)
-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 받은 일반학교의장은 교육과정의 조정, 보조인력의 지원, 학습보조기기의 지원,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

□ 현황 및 실적

- 2003년부터 전국 모든 유·초·중·고등학교에서 일반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 개선과 더불어 사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장애이해교육 실시를 권장해 왔으며 제3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2008년부터는 연 2회 이상 장애이해교육 실시를 추진함
- 2회 이상 장애이해 교육을 실시한 학교 비율은 유치원 59.4%, 초등학교 81.1%, 중학교 76.4%, 고등학교 70.5%임

<표 3·52>

시·도별 일반학교 장애이해 교육 실시율

(단위 : 교, %)

시·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학교수	연2회 이상	연1회	미 실시	전체 학교수	연2회 이상	연1회	미 실시	전체 학교수	연2회 이상	연1회	미 실시	전체 학교수	연2회 이상	연1회	미 실시
서울	862	614	248	-	584	473	111	-	374	273	101	-	308	219	89	-
	100	71.2	28.8	-	100	80.1	19.8	-	100	73	27	-	100	71.1	28.9	-
부산	377	71	306	-	297	208	89	-	172	103	69	-	142	89	53	-
	100	18.8	81.2	-	100	70	30	-	100	59.9	40.1	-	100	62.7	37.3	-
대구	299	187	112	-	215	153	62	-	123	85	38	-	91	69	22	-
	100	62.5	37.5	-	100	71.2	28.8	-	100	69.1	30.9	-	100	75.8	24.2	-
인천	368	324	44	-	224	224	-	-	126	112	14	-	111	99	12	-
	100	88.0	12.0	-	100	100	-	-	100	88.9	11.1	-	100	89.2	10.8	-
광주	246	246	-	-	146	146	-	-	84	84	-	-	65	65	-	-
	100	100	-	-	100	100	-	-	100	100	-	-	100	100	-	-
대전	235	165	70	-	138	102	36	-	86	60	26	-	61	39	22	-
	100	70.2	29.8	-	100	73.9	26.1	-	100	69.8	30.2	-	100	63.9	36.1	-
울산	180	93	87	-	116	110	6	-	61	59	2	-	49	36	13	-
	100	51.7	48.3	-	100	94.8	5.2	-	100	96.7	3.3	-	100	73.5	26.5	-
경기	1,907	419	1,488	-	1,112	749	363	-	556	343	213	-	397	192	205	-
	100	22.0	78.0	-	100	67.4	32.6	-	100	61.7	38.3	-	100	48.4	51.6	-
강원	404	160	244	-	418	277	141	-	164	69	95	-	114	37	77	-
	100	39.6	60.4	-	100	66.3	33.7	-	100	42.1	57.9	-	100	32.5	67.5	-
충북	326	326	-	-	258	258	-	-	131	131	-	-	82	82	-	-
	100	100	-	-	100	100	-	-	100	100	-	-	100	100	-	-
충남	20	17	3	-	432	382	50	-	193	160	33	-	116	85	31	-
	100	85.0	15.0	-	100	88.4	11.6	-	100	82.9	17.1	-	100	73.3	26.7	-
전북	511	205	306	-	423	232	191	-	204	153	51	-	130	68	62	-
	100	40.1	59.9	-	100	54.8	45.2	-	100	75	25	-	100	52.3	47.7	-
전남	582	582	-	-	437	437	-	-	247	247	-	-	154	154	-	-
	100	100	-	-	100	100	-	-	100	100	-	-	100	100	-	-
경북	684	684	-	-	496	496	-	-	278	278	-	-	193	193	-	-
	100	100	-	-	100	100	-	-	100	100	-	-	100	100	-	-
경남	686	481	205	-	495	495	-	-	265	205	60	-	181	136	45	-
	100	70.1	29.9	-	100	100	-	-	100	77.4	22.6	-	100	75.1	24.9	-
제주	110	60	50	-	106	40	66	-	42	10	32	-	30	5	25	-
	100	54.5	45.5	-	100	37.7	62.3	-	100	23.8	76.2	-	100	16.7	83.3	-
학교수	7,797	4,634	3,163	-	5,897	4,782	1,115	-	3,106	2,372	734	-	2,224	1,568	656	-
비율	100	59.4	40.6	-	100	81.1	18.9	-	100	76.4	23.6	-	100	70.5	29.5	-

□ 향후 과제

-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장애관련 내용 심화 보충자료 및 애니메이션 등을 포함한 다양한 장애 이해교육 자료 보급 확대
- 음악회, 동영상 대회 등 다양한 대국민 행사 개최를 통한 장애인식 개선
- 방송 등 미디어를 활용한 전국단위 학생 행사를 통한 장애이해 사업 계속

(5) 편의시설 설치 현황

□ 관련 법규

- 각급학교의 장은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1조)
- 시설주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 교육책임자가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이동수단을 제공하여야 함(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일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이동이 쉽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제곱미터 이상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하며 특수교육대상자의 성별, 연령, 장애유형·정도 및 교육활동 등에 맞도록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2009년 8월 현재 특수학급 설치 유치원은 181개교이며 특수학급 설치 유치원의 장애인 편의시설 평균 설치율은 83.5%임

<표 3·53> 특수학급 설치유치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단위 : 교, %)

시·도	특수학급 설치 유치원	매 개 시 설						내 부 시 설						위생시설		평균 설치율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출입문		복도 손잡이		승강기 경사로 등		화장실 대변기		
		설치교수	설치비율	설치교수	설치비율	설치교수	설치비율	설치교수	설치비율	설치교수	설치비율	설치교수	설치비율	설치교수	설치비율	
서울	34	29	85.3	27	79.4	27	79.4	27	79.4	13	38.2	16	47.1	28	82.4	70.2
부산	11	9	81.8	8	72.7	8	72.7	10	90.9	3	27.3	3	27.3	5	45.5	59.7
대구	3	3	100	2	66.7	3	100	2	66.7	1	33.3	1	33.3	1	33.3	61.9
인천	7	7	100	7	100	7	100	7	100	6	85.7	7	100	7	100	98.0
광주	6	6	100	6	100	6	100	6	100	6	85.7	4	100	6	100	95.2
대전	14	14	100	14	100	14	100	14	100	14	100	13	92.9	14	100	99.0
울산	3	3	100	2	66.7	3	100	3	100	3	100	1	33.3	3	100	85.7
경기	42	41	97.6	42	100	41	97.6	37	88.1	30	71.4	29	69.0	38	90.5	87.8
강원	7	7	100	7	100	7	100	7	100	7	100	7	100	7	100	100
충북	7	7	100	6	85.7	7	100	6	85.7	5	71.4	7	100	7	100	91.8
충남	13	13	100	13	100	13	100	13	100	13	100	11	84.6	13	100	97.8
전북	8	8	100	4	50.0	5	62.5	8	100	4	50.0	3	37.5	6	75.0	67.9
전남	15	15	100	11	73.3	15	100	15	100	11	73.3	-	-	11	73.3	74.3
경북	3	3	100	3	100	3	100	3	100	3	100	3	100	3	100	100
경남	7	7	100	7	100	7	100	7	100	7	100	3	42.9	7	100	91.8
제주	1	1	100	1	100	1	100	1	100	1	100	-	-	1	100	85.7
합계	181	173	95.6	160	88.4	167	92.3	166	91.7	127	70.2	108	59.7	157	86.7	83.5

- 2009년 특수학급 설치 초·중·고등학교는 5,306개교이며 장애인 편의시설 평균 설치비율은 92.4%임

〈표 3·54〉 특수학급 설치 초,중,고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단위 : 교, %)

시·도	특수 학급 설치 초· 중· 고교	매 개 시 설						내 부 시 설						위생시설		평균 설치 비율
		주출입구 접근로		장 애 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출입문		복도 손잡이		승강기 경사로 등		화장실 대변기		
		설치 교수	설치 비율	설치 교수	설치 비율	설치 교수	설치 비율	설치 교수	설치 비율	설치 교수	설치 비율	설치 교수	설치 비율	설치 교수	설치 비율	
서울	553	506	91.5	551	99.6	492	89.0	459	83.0	458	82.8	315	57.0	552	99.8	86.1
부산	383	383	100	383	100	383	100	383	100	351	91.6	220	57.4	380	99.2	92.6
대구	209	209	100	209	100	209	100	209	100	205	98.1	196	93.8	209	100	98.8
인천	309	309	100	309	100	309	100	309	100	309	100	291	94.2	309	100	99.2
광주	309	309	100	309	100	309	100	309	100	309	100	309	100	309	100	100
대전	160	160	100	160	100	150	93.8	153	95.6	140	87.5	121	75.6	155	96.9	92.8
울산	93	93	100	93	100	93	100	93	100	93	100	92	98.9	93	100	99.8
경기	1,050	1,018	97.0	1,011	96.3	1,003	95.5	967	92.1	929	88.5	884	84.2	1,005	95.7	92.7
강원	285	274	96.1	267	93.7	280	98.2	285	100	255	89.5	252	88.4	270	94.7	94.4
충북	213	213	100	213	100	208	97.7	203	95.3	177	83.1	148	69.5	205	96.2	91.7
충남	348	348	100	348	100	348	100	348	100	348	100	142	40.8	348	100	91.5
전북	247	235	95.1	242	98.0	210	85.0	215	87.0	218	88.3	120	48.6	232	93.9	85.1
전남	330	330	100	330	100	330	100	330	100	330	100	225	68.2	330	100	95.5
경북	356	306	86.0	329	92.4	286	80.3	265	74.4	252	70.8	205	57.6	309	86.8	78.3
경남	399	395	99.0	394	98.7	395	99.0	394	98.7	393	98.5	352	88.2	398	99.7	97.4
제주	62	60	96.8	60	96.8	60	96.8	62	100	62	100	48	77.4	61	98.4	95.2
합계	5,306	5,148	97.0	5,208	98.2	5,065	95.5	4,984	93.9	4,829	91.0	3,920	73.9	5,165	97.3	92.4

- 2009년 특수학급 미설치 초·중·고등학교는 6,508개교이며 장애인 편의시설 평균 설치비율은 60.6%임

<표 3·55> 특수학급 미설치 초,중,고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단위 : 교, %)

시·도	미설치 초중고 학교수	매 개 시 설						내 부 시 설						위생시설		평균 설치 비율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출입문		복도 손잡이		승강기 경사로 등		화장실 대변기		
		설치 교수	설치 비율													
서울	713	646	90.6	625	87.7	588	82.5	625	87.7	287	40.3	202	28.3	629	88.2	72.2
부산	228	198	86.8	202	88.6	196	86.0	213	93.4	173	75.9	43	18.9	195	85.5	76.4
대구	220	220	100	208	94.5	187	85.0	219	99.5	142	64.5	133	60.5	195	88.6	84.7
인천	159	159	100	159	100	159	100	133	83.6	80	50.3	54	34.0	159	100	81.1
광주	143	143	100	143	100	143	100	143	100	143	100	28	19.6	143	100	88.5
대전	125	122	97.6	124	99.2	117	93.6	113	90.4	89	71.2	45	36.0	114	91.2	82.7
울산	133	87	65.4	71	53.4	82	61.7	133	100	133	100	55	41.4	87	65.4	69.6
경기	1,015	752	74.1	861	84.8	722	71.1	562	55.4	312	30.7	421	41.5	796	78.4	62.3
강원	411	203	49.4	354	86.1	161	39.2	346	84.2	27	6.6	94	22.9	147	35.8	46.3
충북	258	155	60.1	167	64.7	143	55.4	96	37.2	43	16.7	58	22.5	175	67.8	46.3
충남	393	393	100	393	100	393	100	393	100	393	100	51	13.0	393	100	87.6
전북	509	270	53.0	432	84.9	250	49.1	195	38.3	169	33.2	142	27.9	286	56.2	48.9
전남	1,074	696	64.8	719	66.9	668	62.2	640	59.6	461	42.9	522	48.6	638	59.4	57.8
경북	611	296	48.4	475	77.7	304	49.8	252	41.2	94	15.4	45	7.4	270	44.2	40.6
경남	399	131	32.8	163	40.9	109	27.3	137	34.3	37	9.3	154	38.6	165	41.4	32.1
제주	117	113	96.6	88	75.2	84	71.8	117	100	117	100	6	5.1	88	75.2	74.8
계	6,508	4,584	70.4	5,184	79.7	4,306	66.2	4,317	66.3	2,700	41.5	2,053	31.5	4,480	68.8	60.6

- 150개 특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평균 설치비율은 99%임

<표 3·56>

특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단위 : 교, %)

시·도	학교 수	매 개 시 설						내 부 시 설						위생시설		평균 설치 비율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출입문		복도 손잡이		승강기 경사로 등		화장실 대변기		
		설치 교수	설치 비율	설치 교수	설치 비율	설치 교수	설치 비율	설치 교수	설치 비율	설치 교수	설치 비율	설치 교수	설치 비율	설치 교수	설치 비율	
서울	29	29	100	29	100	29	100	29	100	29	100	29	100	29	100	100
부산	13	13	100	13	100	13	100	13	100	13	100	11	84.6	13	100	97.8
대구	8	8	100	8	100	8	100	8	100	8	100	8	100	8	100	100
인천	7	7	100	7	100	7	100	7	100	7	100	7	100	7	100	100
광주	5	5	100	5	100	5	100	5	100	5	100	5	100	5	100	100
대전	4	4	100	4	100	4	100	4	100	4	100	4	100	4	100	100
울산	3	3	100	3	100	3	100	3	100	3	100	3	100	3	100	100
경기	26	25	96.2	26	100	26	100	26	100	25	96.2	23	88.5	26	100	97.3
강원	7	7	100	7	100	7	100	7	100	7	100	7	100	7	100	100
충북	9	9	100	9	100	9	100	8	88.9	8	88.9	9	100	9	100	96.8
충남	6	6	100	6	100	6	100	6	100	6	100	6	100	6	100	100
전북	9	9	100	9	100	9	100	9	100	9	100	9	100	9	100	100
전남	7	7	100	7	100	7	100	7	100	7	100	5	71.4	7	100	95.9
경북	7	7	100	7	100	7	100	7	100	7	100	7	100	7	100	100
경남	7	7	100	7	100	7	100	7	100	7	100	7	100	7	100	100
제주	3	3	100	3	100	3	100	3	100	3	100	3	100	3	100	100
계	150	149	99.3	150	100	150	100	149	99.3	148	98.7	143	95.3	150	100	99.0

□ 향후 과제

-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지속적 추진

3. 특수교육 지원 강화

1)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관련 법규

-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하급교육행정기관별로 설치·운영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이나 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 초·중·고등학교 또는 관할 지역의 관공서(장애인복지관 포함) 등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
-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담당 업무를 전담하는 특수교육 분야의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7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2009년도 4월 기준으로 180개 모든 지역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으로는 특수교사 324명, 재활복지 교사 330명, 행정직 21명, 치료사 96명, 보조원 21명, 기타인력 85명으로 모두 877명임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시설설비비, 교재교구 및 보조공학기기 구입, 운영비 등 지원예산은 438억임
- 전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성과 보고회 개최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평가 방안 개발 연구 수행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매뉴얼 개발

<표 3·57>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원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시·도	지역 교육청 수	특수교사		재활복지 교사		행정직		합계			기타 계약직				연간 지원 예산 (총액)
		정규	강사	정규	강사	정규	계약	정규	계약	계	치료 사	보조 원	기타	계	
서울	11	1	10	41	-	3	-	45	10	55	1	-	8	9	2,089
부산	5	4	-	22	-	-	1	26	1	27	5	-	14	19	9,043
대구	4	4	6	10	4	-	-	14	10	24	-	-	5	5	765
인천	5	6	17	15	-	-	-	21	17	38	1	6	9	16	1,090
광주	2	2	6	7	-	-	-	9	6	15	-	-	2	2	727
대전	2	4	1	7	2	1	-	12	3	15	2	3	2	7	443
울산	2	1	11	5	1	-	-	6	12	18	14	2	5	21	2,436
경기	25	6	26	42	15	1	-	49	41	90	39	1	2	42	5,836
강원	17	2	17	12	4	-	-	14	21	35	-	5	3	8	1,807
충북	11	2	23	5	7	-	-	7	30	37	11	-	22	33	3,785
충남	15	17	20	17	4	1	14	35	38	73	8	3	5	16	3,908
전북	14	-	28	11	3	-	-	11	31	42	-	-	-	0	2,452
전남	22	1	39	7	25	-	-	8	64	72	-	-	4	4	2,995
경북	23	-	33	17	9	-	-	17	42	59	-	-	4	4	2,949
경남	20	-	28	18	17	-	-	18	45	63	13	-	-	13	2,995
제주	2	2	7	3	-	-	-	5	7	12	2	1	-	3	509
계	180	52	272	239	91	6	15	297	378	675	96	21	85	202	43,829

□ 향후 과제

-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시설 확충 및 전담인력 증원
-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실질적 지원 확대
- 지역사회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활성화

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 관련 법규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보조인력지원·보조공학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 제공, 장애인용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 등을 제공하고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보조인력의 지원 등 통합 지원대책 마련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특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생활지도원을 두어야 하며 각급학교의 장은 각급학교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를 장애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2008년 개정 특수학교 교육과정이 2009년부터 적용됨에 따라 2008년까지는 현행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의거 치료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연차적으로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하면서 치료교육이 교육과정에서 폐지되고 대신 치료지원이 제공되고 있음
- 2009년 치료지원 제공 대상인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 10,227명 중 치료지원이 필요한 지원대상 학생은 5,905명임
- 치료지원대상학생 중 치료사 배치를 통한 지원학생은 1,562명, 유관기관을 활용한 지원학생은 1,198명, 바우처 활용 지원학생은 3,145명임

<표 3·58>

치료지원 현황

(단위 : 명)

시·도	특수교육대상 학생수 (유, 초1~2)	치료지원대상 학생수 (유, 초1~2)	치료지원 방법에 따른 학생수			
			치료사 배치	유관기관 활용	바우처 활용	계
서울	1,890	1,432	140	169	1,123	1,432
부산	919	563	12	359	192	563
대구	536	119	-	119	-	119
인천	450	256	14	57	185	256
광주	164	95	-	7	88	95
대전	493	377	104	45	228	377
울산	329	160	160	-	-	160
경기	1,785	503	481	12	10	503
강원	364	256	5	116	135	256
충북	461	386	81	-	305	386
충남	538	273	112	74	87	273
전북	341	242	-	-	242	242
전남	432	286	146	-	140	286
경북	575	265	-	66	199	265
경남	795	549	282	156	111	549
제주	155	143	25	18	100	143
계	10,227	5,905	1,562	1,198	3,145	5,905

- 치료사 활용 현황은 특수학교 배치 수가 125명,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또는 활용 수가 170명, 기타 7명으로 총 302명의 치료사를 활용하고 있으며 2009년도 치료지원 예산은 약 141억원임

<표 3·59>

치료지원 인력 및 예산

(단위 : 명, 백만원)

시·도	치료사 배치수				'09년 치료지원 예산
	특수학교 배치 수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수	기타	계	
서울	23	41	0	64	2,160
부산	0	6	5	11	2,236
대구	0	0	0	0	198
인천	0	1	1	2	355
광주	0	0	0	0	328
대전	0	2	0	2	273
울산	0	14	0	14	2,425
경기	69	67	0	136	1,080
강원	1	0	0	1	180
충북	9	11	0	20	1,542
충남	2	13	1	16	249
전북	0	0	0	0	209
전남	10	0	0	10	1,155
경북	0	0	0	0	612
경남	11	13	0	24	847
제주	0	2	0	2	205
계	125	170	7	302	14,054

- 특수교육보조원은 2009년 현재 모두 8,245명이 배치되어 있음
- 국고·지방비 지원 등 유급 특수교육보조원은 6,056명으로 특수학교 1,423명, 특수학급 4,093명, 일반학급에 540명이 배치됨
- 공공근로 및 공익요원 등 무급 특수교육보조원은 2,189명이 배치됨

<표 3·60>

시·도별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수

(단위 : 명)

시·도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계			
	유급					공공 근로 · 공익 · 무급	소계	유급					공공 근로 · 공익 · 무급	소계	유급					공공 근로 · 공익 · 무급	소계	
	국고 · 지방 비	자치 단체 (지 활 후 원 단 체)	기타	소계	공공 근로 · 공익 · 무급			국고 · 지방 비	자치 단체 (지 활 후 원 단 체)	기타	소계	공공 근로 · 공익 · 무급			소계	국고 · 지방 비	자치 단체 (지 활 후 원 단 체)	기타				소계
서울	241	-	-	241	175	416	454	164	-	618	129	747	77	27	-	104	30	134	1,297			
부산	167	12	-	179	13	192	219	96	-	315	39	354	37	-	-	37	-	37	583			
대구	103	16	-	119	36	155	128	37	1	166	46	212	8	8	-	16	8	24	391			
인천	84	11	-	95	9	104	294	56	28	378	73	451	-	1	-	1	3	4	559			
광주	22	4	-	26	256	282	78	45	-	123	106	229	1	-	-	1	1	2	513			
대전	65	14	-	79	21	100	174	45	-	219	62	281	4	3	-	7	-	7	388			
울산	48	-	-	48	29	77	115	-	-	115	74	189	18	-	-	18	29	47	313			
경기	87	26	-	113	69	182	518	192	5	715	288	1,003	22	-	2	24	22	46	1,231			
강원	17	5	-	22	231	253	136	42	-	178	35	213	17	1	-	18	-	18	484			
충북	96	5	-	101	14	115	139	26	-	165	27	192	24	7	-	31	1	32	339			
충남	48	3	24	75	13	88	201	15	-	216	29	245	13	8	-	21	1	22	355			
전북	70	-	-	70	11	81	136	8	-	144	13	157	76	22	-	98	6	104	342			
전남	25	-	-	25	33	58	134	14	-	148	70	218	22	3	-	25	19	44	320			
경북	65	-	-	65	30	95	165	37	-	202	22	224	50	7	-	57	2	59	378			
경남	105	2	-	107	30	137	275	58	-	333	38	371	43	8	-	51	13	64	572			
제주	45	4	9	58	18	76	51	7	-	58	9	67	24	7	-	31	6	37	180			
총계	1,288	102	33	1,423	988	2,411	3,217	842	34	4,093	1,060	5,153	436	102	2	540	141	681	8,245			

- 2009년 현재 전국 150개 특수학교에서 통학버스 522대를 운영하여 23,606명의 재학생 중 15,116명(64%)의 학생을 통학 지원하고 있음

<표 3·61> 시·도별 특수학교 학생 통학버스 이용비율

(단위 : 명, 대, %)

시·도	전체학생수	통학버스수	이용학생수	이용비율
서울	4,983	98	2,927	58.7
부산	1,714	42	1,081	63.1
대구	1,402	27	866	61.8
인천	1,113	20	623	56.0
광주	917	27	745	81.2
대전	790	16	446	56.5
울산	540	15	370	68.5
경기	3,687	92	2,590	70.2
강원	980	23	744	75.9
충북	1,334	26	721	54.0
충남	938	27	703	74.9
전북	1,102	30	642	58.3
전남	907	19	629	69.3
경북	1,429	27	819	57.3
경남	1,335	25	855	64.0
제주	435	8	355	81.6
총 계	23,606	522	15,116	64.0

- 급식비 지원은 특수학교 학생 23,606명 중 23,332명(98.8%)의 학생을 대상으로,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 배치학생 51,386명중 48,253명(93.9%)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음
- 급식비 지원예산은 약 313억원임

<표 3·62> 시·도별 특수교육대상학생 급식비 지원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시·도	구분	전체학생 수	지원학생 수	급식비보조금 (1인 1식)			전체예산
				유치원	초등	중등	
서울	특수학교	4,983	4,983	2,230	2,230	2,230	2,039
	일반학교	7,530	7,530	2,230	2,230	2,800	3,401
부산	특수학교	1,714	1,714	2,010	2,010	2,010	620
	일반학교	3,329	3,296	-	1,750	2,600	1,169
대구	특수학교	1,402	1,358	1,580	1,580	2,430	740
	일반학교	2,460	2,000	-	1,600	2,450	730
인천	특수학교	1,113	1,113	1,800	1,800	1,800	365
	일반학교	2,975	2,936	1,700	1,700	2,500	924
광주	특수학교	917	917	1,940	1,940	2,550	391
	일반학교	1,273	922	1,940	1,940	2,550	424
대전	특수학교	790	790	1,700	1,700	2,350	403
	일반학교	1,924	1,924	1,700	1,700	2,350	686
울산	특수학교	540	540	1,950	1,950	1,950	239
	일반학교	1,405	1,405	1,700	2,100	2,300	452
경기	특수학교	3,687	3,687	2,200	2,200	2,200	1,460
	일반학교	12,291	10,972	-	1,700	2,400	4,049
강원	특수학교	980	980	1,930	1,930	1,930	323
	일반학교	1,677	1,677	1,700	1,700	2,330	527
충북	특수학교	1,334	1,334	1,200	1,500	2,150	2,236
	일반학교	1,912	1,912	1,200	1,500	2,150	3,458
충남	특수학교	938	938	2,000	2,000	2,000	449
	일반학교	2,948	2,948	1,500	1,500	2,000	1,032
전북	특수학교	1,102	872	2,300	2,300	2,300	361
	일반학교	1,907	1,796	1,800	1,800	2,500	670
전남	특수학교	907	907	3,190	3,190	3,190	485
	일반학교	2,523	2,499	1,500	1,500	2,350	814
경북	특수학교	1,429	1,429	2,000	2,000	2,000	360
	일반학교	2,731	2,731	1,800	2,300	2,500	721
경남	특수학교	1,335	1,335	2,530	2,530	2,530	694
	일반학교	3,783	3,199	-	1,950	2,360	761
제주	특수학교	435	435	1,800	1,800	1,800	141
	일반학교	718	506	-	1,550	1,950	156
계	특수학교	23,606	23,332	2,023	2,041	2,214	11,306
	일반학교	51,386	48,253	1,706	1,783	2,381	19,974

- 교통비 지원은 특수학교 학생 23,606명 중 통학버스 이용학생 15,116명을 제외한 8,490명 중 3,062명(학부모 포함)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 배치학생 51,386명 중 통학버스 이용학생 1,579명을 제외한 49,807명 중 20,227명(학부모 포함)을 지원하고 있음
- 교통비 지원예산은 약 114억원임

<표 3 . 63> 시도별 특수교육대상학생 교통비 지원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시·도	구분	전체학생 수	학교통학버스 이용학생수	교통비 지원자 수(학부모 포함)			교통비지원 예산
				유치원	초등	중등	
서울	특수학교	4,983	2,927	-	20	19	41
	일반학교	7,530	-	-	-	998	1,066
부산	특수학교	1,714	1,081	-	137	193	428
	일반학교	3,329	-	-	140	619	191
대구	특수학교	1,402	866	-	137	139	114
	일반학교	2,460	-	-	339	636	313
인천	특수학교	1,113	623	-	-	-	786
	일반학교	2,975	-	-	256	702	259
광주	특수학교	917	745	-	-	-	-
	일반학교	1,273	4	-	193	346	227
대전	특수학교	790	446	-	165	213	187
	일반학교	1,924	-	43	360	556	579
울산	특수학교	540	370	2	22	66	38
	일반학교	1,405	27	-	290	431	291
경기	특수학교	3,687	2,590	18	186	96	100
	일반학교	12,291	75	163	2,989	3,363	2,248
강원	특수학교	980	744	-	2	21	30
	일반학교	1,677	-	22	573	486	577
충북	특수학교	1,334	721	14	64	152	238
	일반학교	1,912	-	18	425	605	587
충남	특수학교	938	703	11	48	43	69
	일반학교	2,948	334	33	492	390	623
전북	특수학교	1,102	642	2	12	18	9
	일반학교	1,907	56	-	483	524	370
전남	특수학교	907	629	4	58	125	150
	일반학교	2,523	632	15	532	771	578
경북	특수학교	1,429	819	-	63	120	77
	일반학교	2,731	203	13	602	550	486
경남	특수학교	1,335	855	32	174	485	259
	일반학교	3,783	-	-	401	576	296
제주	특수학교	435	355	-	84	117	69
	일반학교	718	248	-	196	96	105
계	특수학교	23,606	15,116	83	1,172	1,807	2,595
	일반학교	51,386	1,579	307	8,271	11,649	8,796

□ 향후과제

- 치료지원 대상자 확대에 따른 치료지원 인력, 지원 방법 등 지원대책 강구 및 특수교육대상자별 적합한 치료지원 제공
- 특수교육보조원의 지속적 배치 및 특수교육보조원을 활용한 효율적 지원 추진
- 보조인력의 다양화, 등학지원, 학습보조기기,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개별학생의 요구에 적합한 관련서비스 제공

3) 장애아 조기발견을 위한 진단배치 체계 마련

□ 관련 법규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전공과와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정신지체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영아의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및 병·의원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며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진단·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회부하여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평가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 진단·평가를 시행하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진단·평가 시행결과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6조)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일반학교 일반학급, 일반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교 중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야 하며 이 때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2008년 4월에서 2009년 3월까지 특수교육 요구 학생의 선정·배치 현황은 25,233명의 신청을 받아 24,349명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하여 96.5%의 배치율을 보임

<표 3·64>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수

(단위 : 명)

시·도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계		비고
	신청자수	배치자수	신청자수	배치자수	신청자수	배치자수	신청자수	배치자수	
서울	1,412	1,412	1,287	1,269	686	674	3,385	3,355	신청자의 96.5% 선정배치
부산	588	588	923	913	283	283	1,794	1,784	
대구	360	359	524	495	384	366	1,268	1,220	
인천	293	293	1,049	1,029	219	213	1,561	1,535	
광주	251	251	410	402	147	135	808	788	
대전	272	268	497	477	201	191	970	936	
울산	169	133	207	202	407	331	783	666	
경기	1,033	1,031	3,508	3,404	1,605	1,528	6,146	5,963	
강원	217	217	449	432	228	207	894	856	
충북	115	115	438	429	352	348	905	892	
충남	479	474	788	714	285	245	1,552	1,433	
전북	298	298	414	390	386	374	1,098	1,062	
전남	163	163	663	614	194	174	1,020	951	
경북	314	314	411	385	278	261	1,003	960	
경남	243	241	749	690	621	586	1,613	1,517	
제주	125	125	152	151	156	155	433	431	
계	6,332	6,282	12,469	11,996	6,432	6,071	25,233	24,349	

- 일반학생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은 0.94%로 나타났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표 3·65> 시·도별 일반학생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비율

(단위 : 명, %)

시·도	일반학교 학생수					특수교육대상자수					특수교육대상자 비율
	유	초	중	고	계	유	초	중	고	계	
서울	79,884	602,531	354,086	366,700	1,403,201	619	5,419	3,072	3,403	12,513	0.89
부산	36,407	209,033	134,345	139,963	519,748	409	2,286	1,047	1,301	5,043	0.97
대구	27,444	175,791	109,900	109,650	422,785	150	1,659	960	1,095	3,864	0.91
인천	31,793	191,225	114,595	113,754	451,367	287	1,929	910	1,045	4,171	0.92
광주	17,183	121,577	70,468	67,092	276,320	96	948	563	583	2,190	0.79
대전	21,488	113,792	66,635	64,627	266,542	160	1,193	602	759	2,714	1.02
울산	15,892	87,371	53,483	52,495	209,241	101	864	457	542	1,964	0.94
경기	137,113	881,619	481,361	455,803	1,955,896	718	7,331	3,899	4,076	16,024	0.82
강원	14,271	104,468	58,210	56,485	233,434	91	1,272	672	622	2,657	1.14
충북	15,263	110,755	63,516	60,587	250,121	152	1,317	811	988	3,268	1.31
충남	21,948	143,197	77,741	74,736	317,622	186	1,812	850	1,041	3,889	1.22
전북	18,968	134,252	77,285	74,497	305,002	114	1,457	776	662	3,009	0.99
전남	18,099	132,503	75,119	72,268	297,989	117	1,613	820	881	3,431	1.15
경북	32,285	176,228	98,336	98,080	404,929	136	1,916	976	1,144	4,172	1.03
경남	44,434	241,814	137,468	129,682	553,398	201	2,487	1,230	1,200	5,118	0.92
제주	4,988	46,028	25,372	23,436	99,824	54	532	301	273	1,160	1.16
총계	537,460	3,472,184	1,997,920	1,959,855	7,967,419	3,591	34,035	17,946	19,615	75,187	0.94

※ 연도별 비율 : 2005(0.70%), 2006(0.80%), 2007(0.80%), 2008(0.88%), 2009(0.94%)

※ 특수교육대상자수 유치원 과정은 장애영아 포함, 고등학교 과정은 전공과 포함

- 2009학년도 시·도별 초등학교 취학유예자는 9,824명이며 장애로 인한 취학유예아동은 1,385명으로 취학유예자의 14.1%임

〈표 3·66〉 시·도별 초등학교 취학유예자 현황

(단위 : 명, %)

시·도	취학유예자수	취학유예 사유				취학유예자 중 장애 비율
		질병	발육부진	장애	기타	
서울	1,785	39	358	175	1,213	9.8
부산	722	26	170	119	407	16.5
대구	365	18	62	167	118	45.8
인천	573	20	213	86	254	15
광주	948	305	422	57	164	6
대전	253	12	62	24	155	9.5
울산	37	1	5	23	8	62.2
경기	1,933	73	529	263	1,068	13.6
강원	153	11	38	29	75	19
충북	271	4	42	36	189	13.3
충남	306	21	35	70	180	22.9
전북	1,461	15	1,226	95	125	6.5
전남	193	5	28	106	54	54.9
경북	288	24	201	52	11	18.1
경남	505	15	101	69	320	13.7
제주	31	1	-	14	16	45.2
계	9,824	590	3,492	1,385	4,357	14.1

- 2009학년도 장애로 인한 취학유예자수 1,385명 중 만6세 415명, 만7세 542명, 만8세 이상이 428명임

<표 3·67> 시·도별 장애로 인한 취학유예자 연령 분포

(단위 : 명)

시·도	장애로 인한 취학유예자수	연령		
		만6세	만7세	만8세 이상
서울	175	65	77	33
부산	119	31	45	43
대구	167	43	54	70
인천	86	28	38	20
광주	57	12	17	28
대전	24	2	10	12
울산	23	13	6	4
경기	263	84	123	56
강원	29	10	16	3
충북	36	8	16	12
충남	70	30	21	19
전북	95	38	33	24
전남	106	13	32	61
경북	52	17	18	17
경남	69	16	32	21
제주	14	5	4	5
계	1,385	415	542	428

- 시·도별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인등록 비율을 보면 특수학교의 23,606명 중 장애인으로 등록한 학생은 22,800명(96.6%), 특수학급의 39,380명 중 28,536명(72.5%)이고, 일반학급에 배치된 12,006명 중 7,289명(60.7%)이 장애인으로 등록한 학생임

<표 3·68>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장애인 등록 현황

(단위 : 명, %)

시·도	특수 학교			특수 학급			일반 학급			계		
	학생수	등록수	비율	학생수	등록수	비율	학생수	등록수	비율	학생수	등록수	비율
서울	4,983	4,944	99.2	5,743	4,782	83.3	1,787	1,097	61.4	12,513	10,823	86.5
부산	1,714	1,647	96.1	2,711	1,513	55.8	618	382	61.8	5,043	3,542	70.2
대구	1,402	1,402	100	1,794	1,173	65.4	666	384	57.7	3,862	2,959	76.6
인천	1,113	1,113	100	2,560	1,832	71.6	415	262	63.1	4,088	3,207	78.4
광주	917	917	100	1,057	862	81.6	216	146	67.6	2,190	1,925	87.9
대전	790	790	100	1,327	1,160	87.4	597	547	91.6	2,714	2,497	92
울산	540	538	99.6	783	570	72.8	622	333	53.5	1,945	1,441	74.1
경기	3,687	3,260	88.4	9,727	7,998	82.2	2,564	1,666	65.0	15,978	12,924	80.9
강원	980	978	99.8	1,341	763	56.9	336	144	42.9	2,657	1,885	70.9
충북	1,334	1,184	88.8	1,340	908	67.8	572	271	47.4	3,246	2,363	72.8
충남	938	933	99.5	2,352	1,340	57.0	596	251	42.1	3,886	2,524	65.0
전북	1,102	1,038	94.2	1,276	768	60.2	631	370	58.6	3,009	2,176	72.3
전남	907	884	97.5	2,194	1,286	58.6	329	168	51.1	3,430	2,338	68.2
경북	1,429	1,424	99.7	1,971	1,383	70.2	760	538	70.8	4,160	3,345	80.4
경남	1,335	1,331	99.7	2,732	1,846	67.6	1,051	584	55.6	5,118	3,761	73.5
제주	435	417	95.9	472	352	74.6	246	146	59.3	1,153	915	79.4
계	23,606	22,800	96.6	39,380	28,536	72.5	12,006	7,289	60.7	74,992	58,625	78.2

- 전국에 197개(경기2청사 포함 시·도교육청 17개, 지역교육청 180개)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2008년 9월부터 2009년 8월까지 1,725명의 운영위원이 1,134회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참석하였음

<표 3·69>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단위 : 개,명,회)

시·도	위원회수 (교육청수)	구 성 원									운영실적 ('08.9~ '09.8)
		교장(감)	특수교사	대학교원	공무원	의사	보호자	사회 복지사	기타	소계	
서울	12	6	50	1	31	1	6	3	7	105	69
부산	6	12	16	1	12	3	7	1	17	69	44
대구	5	5	15	2	10	3	3	0	10	48	40
인천	6	11	11	0	13	4	6	3	8	56	53
광주	3	9	5	5	9	3	3	0	0	34	20
대전	3	1	8	1	9	1	1	1	5	27	21
울산	3	3	8		10	1	5		4	31	30
경기	27	46	68	6	8	12	17	5	81	243	190
강원	18	21	50	3	54	3	8	4	1	144	105
충북	12	12	19	4	29	8	11	8	11	102	74
충남	16	22	32	6	32	12	18	7	10	139	90
전북	15	28	46	12	16	11	7	2	28	150	65
전남	23	32	101	2	28	7	7	3	15	195	119
경북	24	26	61	2	52	18	21	6	5	191	117
경남	21	32	41	3	23	17	20	8	17	161	77
제주	3	7	6	1	8	3	4	1		30	20
계	197	273	537	49	344	107	144	52	219	1,725	1,134

□ 향후 과제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 역할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지역별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자체, 병원, 보건소 등 유관기관간 조기진단 연계체계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특수교육대상자 정보관리 체계 마련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4) 종일반 및 방과후 학교 운영

□ 관련 법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제공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 개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
- 종일제를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에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되는 경우 해당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종일제 운영을 담당할 인력을 학급당 1인 이상 추가로 배치할 수 있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6조)

□ 현황 및 실적

- 2009년 현재 유아특수교육기관의 종일반은 183학급에서 608명을 대상으로, 특수교육기관 방과후 학교 운영은 7,343학급에서 45,792명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종일반은 유치원교육과정을 1일 8시간 이상 운영하는 유아 특수교육기관을 말하고, 방과후학교는 유, 초, 중, 고 과정 방과후학교와 특기·적성교육 포함

- 특수교육대상학생 방학중 프로그램 운영은 117개 특수학교에서 13,513명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특수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일반학교에 배치된 학생 29,7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함

<표 3·70> 유아특수교육기관 종일반 운영 및 특수교육기관 방과후 학교 현황

(단위 : 급, 명)

시·도	종일반				방과후학교						계			
	특수학교 유치부		(유치원) 특수학급		유아특수 교육기관		초·중등 특수학교		초·중·고 특수학급		종일반		방과후학교	
	급	명	급	명	급	명	급	명	급	명	급	명	급	명
서울	32	96	11	39	-	-	189	1,779	1,007	5,360	43	135	1,196	7,139
부산	17	36	10	33	9	54	193	1,553	487	1,416	27	69	689	3,023
대구	3	18	-	-	-	-	111	787	156	1,049	3	18	267	1,836
인천	6	20	2	8	1	6	47	360	396	2,497	8	28	444	2,863
광주	2	7	-	-	-	-	132	621	193	833	2	7	325	1,454
대전	4	12	2	8	-	-	14	138	-	-	6	20	14	138
울산	1	3	3	14	-	-	9	52	2	10	4	17	11	62
경기	25	112	11	36	9	35	382	2,693	1,144	8,375	36	148	1,535	11,103
강원	5	6	2	4	-	-	51	502	218	1,269	7	10	269	1,771
충북	7	25	1	1	12	43	198	1,093	208	1,164	8	26	418	2,300
충남	5	21	8	22	19	72	112	658	404	2,198	13	43	535	2,928
전북	6	26	-	-	6	10	109	989	245	1,225	6	26	360	2,224
전남	3	9	6	21	-	30	87	754	80	1,246	9	30	167	2,030
경북	5	18	-	-	3	6	94	810	380	2,208	5	18	477	3,024
경남	5	10	-	-	14	56	184	1,106	357	2,145	5	10	555	3,307
제주	-	-	1	3	4	10	7	125	70	455	1	3	81	590
계	126	419	57	189	77	322	1,919	14,020	5,347	31,450	183	608	7,343	45,792

<표 3·71> 특수교육대상학생 방학중 프로그램 운영 현황

시도	특수학교				특수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 (일반학교 배치학생 대상)		합계	
	관내특수 학교수	운영 학교수	과정수	명	과정수	명	과정수	명
서울	29	27	163	2,955	24	199	187	3,154
부산	13	13	231	1,245	485	1,214	716	2,459
대구	8	2	17	72	28	134	45	206
인천	7	5	18	132	89	699	107	831
광주	5	2	7	35	16	102	23	137
대전	4	0	0	0	50	226	50	226
울산	3	2	22	162	254	2,766	276	2,928
경기	26	17	611	3,771	2,896	13,054	3,507	16,825
강원	7	7	98	980	167	1,677	265	2,657
충북	9	9	181	959	764	1,752	945	2,711
충남	6	6	109	928	712	3,488	821	4,416
전북	9	5	27	236	92	361	119	597
전남	7	7	58	395	125	1,443	183	1,838
경북	7	7	18	570	40	500	58	1,070
경남	7	5	153	920	347	2,085	500	3,005
제주	3	3	18	153	6	90	24	243
계	150	117	1,731	13,513	6,095	29,790	7,826	43,303

□ 향후 과제

- 유아특수교육기관 종일반 운영 및 특수교육기관 방과후 교실 운영 확대
장애학생 교육과 보호와의 통합요구 지원 확대
- 방학중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 및 프로그램의 다양화

5) 장애인 직업교육 지원

□ 관련 법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 강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장애(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
-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의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 및 요구에 따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평가·직업교육·고용지원·사후관리 등의 직업재활훈련 및 일상생활적응훈련·사회적응훈련 등의 자립생활 훈련을 실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두어야 하며 진로 및 직업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마련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3조)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효과적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3조)
- 특수교육기관에는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공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

□ 현황 및 추진 실적

- 장애학생의 현장실습 중심 직업교육 강화를 통한 취업률 제고를 위해 전국 5개 특수학교를 선정하여 「학교기업형 직업훈련실」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표 3·72> 2009년 특수학교 「학교기업형 직업훈련실」 설치 사업 학교 현황

선정학교	대전해광학교	한빛명학교	대구5교통합	꽃동네학교	전주선화학교
소속교육청	대전교육청	서울교육청	대구교육청	충북교육청	전북교육청
설립형태	공립	사립	사립	사립	공립
장애유형	정신지체	시각장애	시각·청각·지체·정신지체·정서장애	정신지체·지체장애	청각장애
희망직종	천연화장품생산, 운동화세탁, 빵스낵, 부품조립	공공안마, 헬스키퍼안마, 복합관광상품	보건안마클리닉, 카페테리아, 그래픽 디자인, 생활용품제조, 포장조립, 목공예	제과·제빵 제조 및 판매, 농작물 재배	제과 및 도자기 생산, 제과 및 공예품 판매, 쿠키 만들기 체험장, 생활도자기 체험자

- 2009년 2월 149개 특수학교 고등학교과정 졸업생 2,181명 중에서 취업을 한 학생은 534명으로 취업률은 49.4%임

<표 3·73> 2009년도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생 취업현황

(단위 : 명, %)

시·도	졸업생 수	진학자수	취업자수													취업률
			공예	포장 조립 운반	농업 임업 어업	제과 제빵	IT및 정보 서비스	상업	이료	서비스업	사무직	노무직	복지관 등*	기타	소계	
서울	460	220	4	15	-	5	6	-	33	1	-	1	56	15	136	56.7
부산	174	93	-	8	-	-	-	-	10	1	-	7	17	-	43	53.1
대구	140	23	-	9	-	-	-	-	5	5	-	-	47	-	66	56.4
인천	122	37	-	2	-	-	-	-	10	2	1	3	42	-	60	70.6
광주	86	46	-	2	-	-	-	-	11	-	-	-	-	-	13	32.5
대전	76	54	-	-	-	-	-	-	14	-	-	-	1	-	15	68.2
울산	43	24	-	5	-	1	-	-	-	-	-	-	10	-	16	84.2
경기	297	118	-	6	-	1	1	1	-	3	-	6	36	2	56	31.3
강원	102	66	-	6	-	-	-	-	9	-	-	1	8	-	24	66.7
충북	144	81	-	7	-	1	-	-	18	1	-	-	3	3	33	52.4
충남	73	56	-	4	-	-	-	-	-	-	-	-	2	-	6	35.3
전북	88	44	-	2	-	-	-	-	5	1	-	-	0	-	8	18.2
전남	89	36	-	8	1	-	2	-	2	-	-	-	4	-	17	32.1
경북	121	101	-	1	-	-	-	-	-	-	-	3	3	-	7	35.0
경남	128	97	-	7	-	-	-	-	-	-	-	0	1	1	9	29.0
제주	38	3	2	0	-	-	-	-	-	15	-	8	-	-	25	71.4
총계	2,181	1,099 (50.4%)	6	82	1	8	9	1	117	29	1	29	230	21	534	49.4

※ 취업률 = {취업자수/(졸업자수-진학자수)} × 100

※ 복지관 등* : 복지시설, 보호작업장 등에서 급여를 받는 직업재활 프로그램

- 2009년 2월 특수학급 고등학교과정 졸업생 1,641명 중에서 취업한 학생은 588명으로 취업률은 52.6%임

<표 3·74> 2009년도 고등학교 특수학급 졸업생 취업현황 (단위 : 명, %)

시·도	졸업생 수	진학자 수	취업자수													취업률
			공예	포장 조립 운반	농업임업 어업	제과 제빵	IT및 정보 서비스	상업	이료	서비스업	사무직	노무직	복지관 등*	기타	소계	
서울	358	38	1	15	0	2	0	1	0	11	2	0	83	3	118	36.9
부산	94	37	0	2	0	0	0	0	0	5	1	2	27	0	37	64.9
대구	81	51	0	3	0	0	0	0	0	4	0	0	20	0	27	90.0
인천	118	34	0	22	0	1	0	0	0	2	0	5	25	0	55	65.5
광주	44	19	0	3	0	4	1	0	0	0	0	0	7	0	15	60.0
대전	56	29	0	1	0	0	0	0	0	0	0	0	13	5	19	70.4
울산	34	25	0	1	0	0	0	0	0	0	0	1	2	1	5	55.6
경기	408	142	4	25	10	0	3	0	0	22	1	2	83	8	158	59.4
강원	26	8	0	3	0	0	1	0	0	2	0	2	2	0	10	55.6
충북	77	17	0	6	2	1	0	0	0	2	1	0	15	1	28	46.7
충남	117	50	0	4	8	0	0	0	0	4	3	10	12	0	41	61.2
전북	25	13	0	0	0	1	0	0	0	1	0	2	2	0	6	50.0
전남	75	11	0	0	6	0	0	1	0	8	0	2	13	0	30	46.9
경북	55	20	0	4	0	0	0	0	0	0	0	1	9	1	15	42.9
경남	57	22	0	2	1	1	0	0	0	1	0	2	10	0	17	48.6
제주	16	8	0	0	0	0	0	0	0	1	0	6	0	0	7	87.5
총계	1,641	524 (31.9%)	5	91	27	10	5	2	0	63	8	35	323	19	588	52.6

※ 취업률 = {취업자수/(졸업자수-진학자수)} × 100
 ※ 복지관 등* : 복지시설, 보호작업장 등에서 급여를 받는 직업재활 프로그램

- 2009년 2월 고등학교 일반학급 특수교육대상자 졸업생 667명 중에서 취업한 학생은 71명으로 취업률은 25.6%임

<표 3·75> 2009년도 고등학교 일반학급 특수교육대상자 취업현황
(단위 : 명, %)

시·도	졸업생 수	진학자 수	취업자수													취업률	
			공예	포장조립 운반	농업 임업 어업	제과 제빵	IT및 정보 서비스	상업	의료	서비스업	사무직	노무직	복지 관등*	기타	소계		
서울	88	51	-	-	-	-	-	-	-	-	-	2	-	-	-	2	5.4
부산	25	20	-	1	-	-	-	-	-	-	-	-	-	-	-	1	20.0
대구	57	39	-	-	-	-	-	-	-	-	-	-	-	4	-	4	22.2
인천	22	6	-	3	-	-	-	-	-	-	-	-	-	-	3	6	37.5
광주	1	1	-	-	-	-	-	-	-	-	-	-	-	-	-	0	0.0
대전	31	22	-	1	-	-	-	-	-	-	-	-	-	1	-	2	22.2
울산	19	18	-	-	-	-	-	-	-	-	-	-	-	-	-	0	0.0
경기	260	145	17	1	-	-	1	-	-	3	-	2	5	1	30	26.1	
강원	11	8	-	-	-	-	-	-	-	-	-	1	-	-	1	33.3	
충북	44	27	-	-	1	-	-	2	-	-	1	-	-	-	4	23.5	
충남	39	14	-	-	2	-	1	-	-	2	2	-	1	-	8	32.0	
전북	5	2	-	-	-	-	-	-	-	-	-	-	-	-	0	0.0	
전남	14	4	-	-	-	-	-	-	-	2	-	2	1	-	5	50.0	
경북	19	11	-	-	-	-	-	-	-	-	-	1	2	-	3	37.5	
경남	22	18	-	-	-	-	-	-	-	-	-	-	1	-	1	25.0	
제주	10	4	-	-	-	-	-	-	-	-	-	3	1	-	4	66.7	
총계	667	390 (58.5%)	17	6	3	0	2	2	0	7	5	9	16	4	71	25.6	

※ 취업률 = {취업자수/(졸업자수-진학자수)} × 100

※ 복지관 등* : 복지시설, 보호작업장 등에서 급여를 받는 직업재활 프로그램

- 2009년 4월 현재 전공과 설치 특수학교는 모두 73개교이며 214학급임
 - 2009년 전공과를 신설한 특수학교는 2008년에 비해 9개교 증가했음
 - 특수학교 전공과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시각장애학교 139명, 청각장애학교 60명, 정신지체학교 1,722명, 지체장애학교 49명, 정서장애학교 92명 등 2,062명임

<표 3·76> 특수학교 전공과 설치 현황 (단위 : 교, 학급, 명)

장애별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장애	계
학교수	7	1	56	4	5	73
학급수	18	6	174	6	10	214
학생수	139	60	1,722	49	92	2,062

- 2009년 2월 특수학교 전공과 이수자 828명 중 447명이 취업하여 취업률은 54.3%임

<표 3·77> 2009년도 전공과 이수자 취업현황 (단위 : 명, %)

시·도	전공과 이수자	진학자수	취업자수													취업률
			공예	포장조립 음반	농업 임업 어업	제과 제빵	IT및 정보 서비스	상업	의료	서비스업	사무직	노무직	복지 관등	기타	소계	
서울	155	2	-	3	-	-	-	-	8	11	-	2	59	6	89	58.2
부산	69	2	-	1	1	-	-	-	-	-	-	-	36	-	38	56.7
대구	35	-	-	11	-	-	-	1	-	3	-	4	9	1	29	82.9
인천	25	-	-	1	3	-	-	-	-	2	-	6	10	-	22	88.0
광주	33	-	-	2	-	2	-	-	-	-	-	-	1	-	5	15.2
대전	56	-	-	12	-	-	-	-	4	1	-	-	27	-	44	78.6
울산	-	-	-	-	-	-	-	-	-	-	-	-	-	-	-	-
경기	129	-	-	4	-	-	-	-	-	-	-	1	63	-	68	52.7
강원	40	-	-	8	-	-	-	-	1	2	-	-	10	-	21	52.5
충북	16	-	-	1	-	1	-	-	3	4	-	-	-	5	14	87.5
충남	82	1	-	6	1	-	-	1	-	2	-	-	26	-	36	44.4
전북	33	-	-	2	-	-	-	-	-	-	-	1	13	4	20	60.6
전남	21	-	-	2	-	-	-	-	-	-	-	2	15	-	19	90.5
경북	58	-	1	10	1	-	-	-	-	1	-	1	2	-	16	27.6
경남	76	-	-	3	-	-	-	-	-	-	-	-	23	-	26	34.2
제주	-	-	-	-	-	-	-	-	-	-	-	-	-	-	-	-
총계	828	5	1	66	6	3	0	2	16	26	0	17	294	16	447	54.3

※ 취업률 = {취업자수/(졸업자수-진학자수)} × 100

※ 복지관 등 : 복지시설, 보호작업장 등에서 급여를 받는 직업재활 프로그램

□ 향후 과제

- 특수교육대상학생 직업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
- 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특수교육대상자의 직업재활을 위한 직업평가-훈련-배치의 연계 지원체제 강화
- 지역사회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장애인 고용 지원기관 및 산업체 등 관련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특수학교 직업교육과정의 운영방법 개선 및 지원
- 특수학교 전공과 운영의 효율화 및 장애학생의 성인생활로의 전환을 위한 노동부 등 관련부처 및 관련기관 협력
- 현장중심 직업교육과정 적용 확대

6) 특수교육 행·재정 지원

□ 관련 법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특수교육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국가는 업무 추진이 부진하거나 예산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비용으로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급식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 외에 학교운영지원비, 통학비,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
-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사립특수교육기관에 위탁한 경우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과 같은 수준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운영비, 시설비, 실험실습비, 진로 및 직업교육비, 교직원의 인건비, 그 밖에 특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4조)

□ 현황 및 추진 실적

-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특수교육담당 장학관은 17명이며 이 중 10명이 특수교육전담 장학관이고, 장학사 33명 중 31명(91.2%)이 특수교육 전공자임
- 지역교육청 특수교육 업무 담당 장학사 182명 중 66명(36.3%)이 특수교육 전공자임

<표 3·78> 시·도별 특수교육 담당 전문직 현황 (단위 :명)

시·도	시·도교육청				시·군·구교육청			
	장 학 관		장 학 사		교육청수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수	전 공 여 부	
	유아·특수겸임	특수교육전담	전공	비전공			전공	비전공
서울	-	1	2	-	11	11	7	4
부산	-	1	3	-	5	5	2	3
대구	-	1	2	-	4	5	2	3
인천	1	-	2	-	5	5	4	1
광주	-	-	1	-	2	2	1	1
대전	-	1	1	-	2	2	-	2
울산	1	-	2	-	2	2	2	-
경기	1	1	4	1	25	25	6	19
강원	1	1	2	-	17	17	5	12
충북	-	1	1	1	11	11	3	8
충남	-	1	2	-	15	16	6	10
전북	1	-	1	-	14	14	1	13
전남	-	1	2	-	22	22	10	12
경북	1	-	2	-	23	23	9	14
경남	-	1	3	-	20	20	6	14
제주	1	-	1	-	2	2	2	-
계	7	10	31	2	180	182	66	116

- 시·도별 특수학교(급)의 전체 특수교육 담당교원의 특수학교 교사자격증 소지율은 특수학교가 95.7%, 특수학급이 97.0%로 전체 96.4%로 나타남

<표 3·79> 시·도별 특수교육 담당교사 자격 소지 현황

(단위 : 명, %)

시·도	특수 학교				특수 학 급				합 계			
	현원	소지자	미 소지	비율	현원	소지자	미 소지	비율	현원	소지자	미 소지	비율
서울	1258	1,213	45	96.4	1,002	1,002	-	100	2,260	2,215	45	98.0
부산	455	423	32	93.0	497	471	13	94.8	952	894	45	93.9
대구	369	341	28	92.4	280	280	-	100	649	621	28	95.7
인천	270	269	1	99.6	412	411	1	99.8	682	680	2	99.7
광주	262	254	8	96.9	199	188	11	94.5	461	442	19	95.9
대전	180	172	8	95.6	200	200	-	100	380	372	8	97.9
울산	138	136	2	98.6	130	127	3	97.7	268	263	5	98.1
경기	963	957	6	99.4	1,766	1,756	10	99.4	2,729	2,713	16	99.4
강원	283	276	7	97.5	308	287	21	93.2	591	563	28	95.3
충북	325	318	7	97.8	247	236	11	95.5	572	554	18	96.9
충남	227	215	12	94.7	441	441	-	100	668	656	12	98.2
전북	241	236	5	97.9	263	242	21	92.0	504	478	26	94.8
전남	216	203	13	94.0	393	368	25	93.6	609	571	38	93.8
경북	395	357	38	90.4	451	413	38	91.6	846	770	76	91.0
경남	357	312	45	87.4	468	430	38	91.9	825	742	83	89.9
제주	145	141	4	97.2	71	65	6	91.5	216	206	10	95.4
계	6,084	5,823	261	95.7	7,128	6,917	198	97.0	13,212	12,740	459	96.4

○ 시·도교육청 특수교육 예산은 1조 5,043억으로 시·도교육청 총예산 대비 3.6%의 비율을 나타냄

<표 3·80> 시·도별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 (단위 : 천원, %)

시·도	시도교육청 총교육예산	특수교육 예산							
		인건비	교급당 운영비	시설비	자산 취득비	연수비	기타	소계	비율
서울	6,315,817,715	151,339,062	26,553,103	16,617,000	5,850,000	136,760	5,976,000	206,471,925	3.3
부산	2,716,627,154	69,178,719	18,066,862	7,282,144	149,900	371,658	156,208	95,205,491	3.5
대구	1,906,155,503	36,129,716	14,329,103	20,147,386	546,481	557,434	129,880	71,840,000	3.8
인천	2,039,682,819	45,272,053	18,083,363	28,029,769	605,798	958,426	578,533	93,527,942	4.6
광주	1,377,377,747	27,906,800	16,320,435	1,194,000	164,564	63,600	1,521,731	47,171,130	3.4
대전	1,342,304,274	29,662,506	10,712,845	19,770,594	15,034,300	407,099	2,321,824	77,909,168	5.8
울산	1,053,811,052	14,175,000	13,343,876	4,378,554	485,874	343,256	1,849,852	34,576,412	3.3
경기	8,716,906,838	137,504,309	79,132,746	17,567,279	1,809,662	774,271	29,164,561	265,952,828	3.1
강원	1,821,334,000	44,688,740	17,552,587	11,795,630	854,520	570,215	138,535	75,600,227	4.2
충북	1,495,751,521	42,705,995	8,739,696	7,049,533	1,022,986	116,150	6,728,387	66,362,747	4.4
충남	2,320,140,828	42,863,578	20,572,393	17,927,780	1,280,300	862,995	6,500,045	90,007,091	3.9
전북	2,131,974,458	37,275,920	2,716,654	25,918,695	734,251	177,790	6,675,040	73,498,350	3.4
전남	2,337,700,000	39,558,272	21,042,326	20,111,490	454,240	452,928	1,929,714	83,548,970	3.6
경북	2,701,554,000	43,598,331	18,932,288	30,447,658	836,000	341,645	2,440,702	96,596,624	3.6
경남	2,819,071,420	57,992,734	21,455,859	14,830,517	2,500,000	467,203	1,351,410	98,597,723	3.5
제주	598,804,190	11,554,913	3,514,227	8,216,260	62,000	16,940	4,108,166	27,472,506	4.6
소계	41,695,013,519	831,406,648	311,068,363	251,284,289	32,390,876	6,618,370	71,570,588	1,504,339,134	3.6

※ 시·도교육청 총예산 및 특수교육 예산은 국고, 지방비, 주민(기관등) 부담수입 및 기타 자원 등을 포함한 총 예산 기준임

※ 대전교육청 특수교육 예산은 특수학교 신설에 따른 예산이 포함됨

- 2009년도 특수교육 총예산은 시·도교육청 예산 1조 5,043억, 국립학교 예산 414억을 합하여 1조 5,458억원임

<표 3·81> 특수교육 총예산 (단위 : 천원)

구분	특수교육 예산						
	인건비	교급당 운영비	시설비	자산 취득비	연수비	기타	소계
시도	831,406,648	311,068,363	251,284,289	32,390,876	6,618,370	71,570,588	1,504,339,134
국립학교	24,357,389	4,136,653	4,409,837	821,264	63,107	7,626,562	41,414,812
총계	855,764,037	315,205,016	255,694,126	33,212,140	6,681,477	79,197,150	1,545,753,946

- 2009년도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비는 20,559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633천원 증액되었음

<표 3·82> 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비 (단위 : 천원)

연도	특수교육비	수혜학생수	1인당 특수교육비
1995	224,006,328	53,117	4,217
1996	238,102,827	47,947	4,965
1997	298,596,440	48,089	6,209
1998	337,070,063	48,518	6,947
1999	315,782,768	50,269	6,282
2000	340,225,173	54,732	6,216
2001	406,310,075	51,330	7,916
2002	443,073,183	54,470	8,134
2003	564,394,700	53,404	10,568
2004	666,840,034	55,374	12,042
2005	822,051,094	58,362	14,085
2006	1,051,284,265	62,538	16,810
2007	1,145,295,143	65,940	17,369
2008	1,352,939,269	71,484	18,926
2009	1,545,753,946	75,187	20,559

- 2009년도 특수교육 예산은 1조 5,458억원으로 2008년도에 비해 약 1,928억원 증가된 금액이며,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의 4.0%를 차지함

<표 3·83> 연도별 특수교육 예산 비율 (단위 : 천원)

연 도	교육과학기술부 예산	특수교육 예산	비율(%)
1995	12,495,810,267	224,006,328	1.8
1996	15,565,216,500	238,102,827	1.5
1997	18,287,608,665	298,596,440	1.6
1998	18,127,837,527	337,070,063	1.9
1999	17,456,265,000	315,782,768	1.8
2000	19,172,027,020	340,225,173	1.8
2001	20,049,279,000	406,310,075	2.0
2002	22,278,358,000	443,073,183	2.0
2003	24,404,401,310	564,394,700	2.3
2004	26,384,088,000	666,840,034	2.5
2005	27,438,044,595	822,051,094	3.0
2006	29,426,304,000	1,051,284,265	3.6
2007	31,044,748,000	1,145,295,143	3.7
2008	35,897,425,000	1,352,939,269	3.8
2009	38,698,867,000	1,545,753,946	4.0

※ 교육과학기술부 예산 중 1995년~2007년까지 예산은 구 교육인적자원부 예산이며,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된 2008년 이후 예산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전체 예산 중 교육 부문의 예산임

- 시·도별 사립특수학교 재정지원 총액은 3,081억원으로 전체 특수학교 예산의 51%임

<표 3·84>

시·도별 사립특수학교 지원 비율

(단위 : 천원)

시·도	특수학교수			특수학교 전체예산	사립특수학교 지원예산						비율
	국립	공립	사립		인건비	교·급당 운영비	시설비	자산 취득비	기타	계	
서울	3	7	19	96,764,067	44,473,874	8,266,364	4,128,000	-	-	56,868,238	58.8
부산	-	6	7	45,536,732	11,520,531	1,647,626	46,900	-	14,000	13,229,057	29.1
대구	-	2	6	33,293,135	15,226,400	5,143,554	1,890,000	148,174	30,000	22,438,128	67.4
인천	-	3	4	37,335,960	8,695,252	2,350,390	6,951,000	23,000	-	18,019,642	48.3
광주	-	2	3	29,975,545	8,295,104	5,022,225	376,200	50,421	623,495	14,367,445	47.9
대전	-	2	2	14,634,003	6,903,572	746,568	-	23,300	253,911	7,927,351	54.2
울산	-	1	2	12,651,827	5,228,057	1,460,924	133,300	19,900	678,779	7,520,960	59.4
경기	2	5	19	82,836,832	45,093,895	11,903,768	8,489,099	812,973	6,009,345	72,309,080	87.3
강원	-	5	2	37,741,657	3,025,148	1,362,170	91,200	16,200	27,356	4,522,074	12.0
충북	-	2	7	25,573,984	14,851,841	2,218,741	1,416,337	436,480	-	18,923,399	74.0
충남	-	4	2	22,411,683	3,333,000	301,290	1,238,650	28,266	101,793	5,002,999	22.3
전북	-	4	5	42,873,883	8,505,819	1,142,043	986,518	545,094	760,650	11,940,124	27.8
전남	-	2	5	36,716,935	8,904,431	1,428,897	984,725	132,640	1,915,801	13,366,494	36.4
경북	-	2	5	39,456,238	20,102,651	2,339,194	8,322,459	86,000	2,312,478	33,162,782	84.0
경남	-	6	1	32,796,270	2,392,199	673,713	-	-	75,582	3,141,494	9.6
제주	-	2	1	12,924,428	2,766,594	289,665	1,461,237	9,347	800,403	5,327,246	41.2
총계	5	55	90	603,523,179	209,318,368	46,297,132	36,515,625	2,331,795	13,603,593	308,066,513	51.0

- 기존 특수학급당 연간 평균 운영경비는 유치원 39,797천원, 초등학교 31,686천원, 중학교 31,822천원, 고등학교 36,167천원임
- 신설 특수학급당 연간 평균 운영경비는 유치원 53,975천원, 초등학교 46,044천원, 중학교 46,122천원, 고등학교 49,151천원임

<표 3·85>

특수학급 학급당 연간 운영비 지원

(단위 : 천원)

시·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존	신설	기존	신설	기존	신설	기존	신설
서울	30,852	-	31,364	51,364	28,307	48,307	33,568	53,568
부산	30,809	49,809	27,922	31,922	31,419	35,419	36,175	43,175
대구	35,287	45,287	18,487	28,487	21,580	21,580	27,173	37,173
인천	24,478	70,478	28,615	74,615	30,499	76,499	31,736	77,736
광주	52,322	-	33,426	43,426	33,193	43,193	35,454	45,454
대전	28,302	41,032	28,331	41,331	27,731	40,731	27,731	40,731
울산	51,487	-	23,545	41,829	20,858	39,972	36,277	46,188
경기	19,870	43,260	22,833	46,133	21,387	43,887	24,288	46,779
강원	33,860	49,660	24,505	40,305	26,514	42,314	30,033	45,833
충북	37,263	56,263	36,156	55,156	36,950	55,950	38,749	56,249
충남	64,623	70,623	45,205	51,205	44,706	50,706	50,700	56,700
전북	67,204	-	46,657	53,743	43,141	45,814	46,598	47,388
전남	52,515	62,515	34,646	44,646	34,944	44,944	44,040	54,040
경북	35,400	45,230	37,420	43,170	37,399	49,899	41,543	48,580
경남	49,563	59,563	42,620	52,620	42,620	52,610	42,620	52,620
제주	22,919	-	25,245	36,745	27,896	-	31,991	34,197
평균	39,797	53,975	31,686	46,044	31,822	46,122	36,167	49,151

※ 특수학급 운영비 : 특수학급 기본 운영비 및 장애유아무상교육비, 특수교육보조원, 종일반 및 방과후 학교 운영,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등 국고지원 사업 예산, 특수학급 관련 특별교부금사업, 기타 통학비, 급식비 지원 등 특수학급 예산

□ 향후과제

- 시·도교육청 특수교육 담당장학관의 특수교육 업무 전담화, 시·도교육청 특수교육 담당장학사 및 시·군·구 교육청의 특수교육 담당장학사에 특수교육 전공자 배치를 확대하여 특수교육 지원 행정의 전문성 강화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인해 2008년부터 특수교육 지원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지역별 균형적인 특수교육 발전 및 안정적인 재정 확보
- 특수교육 투자실적 평가제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 유도

4. 국립특수교육원의 특수교육 지원 사업 실적

□ 관련법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계의 연구·개선, 특수교육 교원의 양성 및 연수,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개발 및 보급,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의 강구, 장애인등에 대한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방안의 강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
- 국립특수교육원 기획연구과장은 장애유형별 학습자료 개발·보급, 특수교육 정책의 국제비교 및 연구 등을 분장하고 연수과장은 연수과정의 개발·시행, 특수교육 담당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장애인교육복지정보센터의 운영, 원격 특수교육방송의 운영을 분장함(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

1) 연구 사업

□ 현황 및 추진실적

- 1994년 5월 16일 특수교육에 관한 실험연구, 특수교육 학습자료 개발 등 특수교육 전문연구기관으로 경기도 안산시에 국립특수교육원을 개원함
- 국립특수교육원에서는 특수교육 실태조사, 특수교육 기초연구, 특수교육 학습자료 개발, 교육과정 및 교재·교구 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국립특수교육원은 2009년도에 급변하는 특수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추어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른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 실태조사 및 통합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 특수교육 기초연구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교재·교구 개발 등 총 21개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에 의거 2011년에 실시될 특수교육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특수교육대상자 선별도구 보고서 및 선별·진단 지침서 개발,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성과 평가지침 개발 연구보고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지침 보고서 및 매뉴얼 개발에 관한 3종의 연구를 실시하고 있음
 - 장애학생의 특성에 적합한 특수학교(급) 및 일반학교 통합학급의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 자료제공을 위해 중학교 1~3학년용 도덕, 체육, 음악, 미술 교과에 대한 학년별 교수·학습자료 등 총 12종, 각 2,300부의 학습 자료와 DVD 4,700세트를 제작하여 보급할 계획임
 - 특수교육 기초 연구과제로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개발 연구’,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모형 개발’, ‘인공와우아동의 청능훈련을 위한 말지각 발달 선별검사도구 개발’ 등의 3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총 1,150부의 지침서 및 보고서를 현장에 배부할 계획임
 - 특수학교 교육과정 수시 개정 체제에 입각하여 효율적인 교육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택중심 교육과정 국정 교과용도서 편찬 지침서 개발’,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국정 교과용 도서 개발’, ‘장애성인 원격연수 교육과정 개발’ 등의 교육과정 관련 연구과제 3종을 추진함

<표 3·86>

2009년도 국립특수교육원 연구사업

(단위 : 종, 부, 백만원)

과제명(종수)	추진과제	예산
특수교육 실태조사(3종)	- 특수교육대상자 선별도구 보고서 및 선별·진단지침서 개발 -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성과 평가지침 개발 연구보고서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지침 보고서 및 매뉴얼 개발	250
특수교육 기초연구(3종)	-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개발연구(3/3년차) -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모형 개발 - 인공와우이동의 청능훈련을 위한 말지가 선별검사도구 개발(1/2년차)	91
교육과정·교과서 연구(3종)	- 선택중심 교육과정 국정 교과용도서 편찬 지침서 개발 -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국정 교과용도서 개발(1/2년차) - 장애성인 원격연수 교육과정 개발	10
특수교육 학습자료 개발(12종)	- 통합교육을 위한 중학교 1-3학년 학년별 교수 학습자료 개발(4개 교과)	478
계	총 21종	829

- 2009년 국립특수교육원은 2009년 2월에 특수학교(급) 교사를 대상으로 특수학교 교육과정용도서 활용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3월에는 시·도 및 지역교육청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제16회 국내세미나를 개최하였음. 또한 6월에는 교육전문직 및 특수학교(급) 교사를 대상으로 제16회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음
- 2008년 국립특수교육원은 ‘원요람 및 리플렛’을 발행하였고 ‘현장특수교육 제16권 1호, 2호와 ‘특수교육 연구 제16권 1호’를 발간하였으며 향후 ‘현장특수교육 제16권 3호, 4호, 및 ‘특수교육 연구 제16권 2호’를 발간할 예정임
- 국제교류협력과 특수교육 학술 및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제9회 한·일공동세미나에 참석하여 양국 간 특수교육의 이해를 도모하였고, OECD 등 각종 국제회의 참석 및 관련기관 방문 등을 연 4회 추진함

<표 3·87> 2009년도 특수교육 학술세미나 개최 현황

(단위 : 회, 명)

구 분	개 최 회 수	주 제	참석인원
특수학교 교과용도서 현장활용 세미나	1	특수학교 교과용도서의 보완 방향 및 각 교과별 활용 방안	201
국내세미나	1	새 시대로 도약하는 2009년 특수교육의 비전	222
국제세미나	1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한 국제적 동향	188
계	3		611

□ 향후과제

- 급변하는 교육환경과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에 능동적·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특수교육 기초 연구과제의 확대·추진을 통해 발전적인 특수교육의 방향 제시
- 교육과정 수시 개정 체제에 따른 교과용도서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현장 특수교육의 질적 운영 방안 제시
- 특수(통합)학급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보급을 통하여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통합교육 성과 신장 모색

2) 연수 사업

- 국립특수교육원은 2009년 7월말 현재 특수학교(급) 교원, 일반학교 교원, 교육전문직, 교수, 특수교육보조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45개 과정, 총 11,692명에게 연수 및 세미나를 실시하였음
- 집합(출석)연수는 23개 과정 2,249명, 원격교육연수는 22개 과정 9,443명이 이수하였음

- 2009년 원격교육연수의 확대 운영을 위해 장애학생을 위한 사회과 교수·학습 방법(60시간), 개정특수학교 교육과정 해설서 활용 방안(30시간), 콘텐츠 리뉴얼 등 총 3개 과정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음

<표 3·88> 2009년도 국립특수교육원 집합연수 실적

(단위 : 명)

구분	과 정 명	이수인원	기간	대 상
자격연수	특수학교(유치원) 1급 정교사 과정	89	31일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대상자
	특수학교(초등) 1급 정교사 과정	102	31일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대상자
	특수학교(초등) 정교사 재활복지 자격전환 과정	141	54일	재활복지 자격소지자 및 취득예정자
	특수학교(중등) 교사 재활복지 자격전환(4개 과정)	447	64일	재활복지 자격소지자 및 취득예정자
직무연수	특수교육 장학 과정	47	5일	중·고등학교 교감, 교육전문직
	장애영아 교육지원 과정	89	4일	유치원 특수학교(급) 교사
	특수학교 교육과정 해설서 활용 과정	185	2일	특수학교(급) 교사
	고위 관리자 과정	34	2일	시·도교육감, 교육연수원장, 교육장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자 과정	70	3일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자
	장애학생의 가족참여 과정	36	1일	장애학생 가족참여 국외체험 연수 대상자
	특수교육 관리자 과정	78	4일	중·고등학교 교장, 교육전문직
	특수교육 전문가 과정	19	1일	특수교육 전문가 해외연수 대상자
	강원 방문형	107	1일	유·초·중등 통합학급 교사
	전북 방문형	300	2일	특수학교(급) 교사
	전남 방문형	150	1일	특수학교(급) 교사
	제주 방문형	111	3일	유·초·중등 통합학급 교사
	해외연수	특수교육 전문가 해외연수 과정	19	9일
장애학생 가족참여 국외체험연수 과정		36	9일	시각장애학교 학생, 부모, 담임교사
전문교육	대학장애학생 지원센터 담당자 과정	109	3일	대학장애학생 지원센터 담당자
세미나	특수학교 교육과정 해설서 및 교과용 도서 활용 관련 세미나	80	1일	특수교육 관련 학과 교수
계		2,249	.	.

<표 3·89> 2009년도 국립특수교육원 원격연수 실적 (단위 : 명)

구분	과 정 명	이수 인원	기간	대 상
교원직무연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관련법규의 이해	181	2주	모든 교원
	장애학생의 성공적인 장래생활을 위한 전환교육방안	77	4주	"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지원능력 개발	115	4주	"
	건전계입문화와 올바른 이용지도 방법	33	2주	"
	현장교사를 위한 SPSS I	120	2주	"
	현장교사를 위한 SPSS II	51	3주	"
	장애학생 과학과 교수-학습지도	151	4주	"
	교실에서 할 수 있는 치료서비스기초과정	182	4주	"
	특수교육 관련 검사도구의 사용법	291	3주	"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지원능력 개발(인천)	568	4주	"
	일반학교에서의 장애학생 지원(울산)	510	4주	"
	일반학교에서의 장애학생 지원(대전)	307	4주	"
	일반학교에서의 장애학생 지원(경북)	178	4주	"
	일반학교에서의 장애학생 지원(경남)	661	4주	"
	치료교육교사 표시과목 변경 직무 연수(2차)	24	4주	"
	장애학생의 성공적인 장래생활을 위한 전환교육방안	39	4주	"
	일반학교에서의 장애학생 지원(서울)	1048	2주	"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지원능력 개발-경기1차	2567	4주	"
특수교육보조원연수	함께하는 특수교육	307	2주	특수교육보조원
	특수교육보조원의 특수교육 지원능력개발	617	2주	"
	특수교육지원을 위한 보조자로서의 역할과 이해	664	2주	"
	특수교육보조원의 특수교육 지원능력개발	752	2주	"
계		9,443	.	.

□ 향후과제

- 통합교육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특수교육 교원의 일반교과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확대 및 연수주기 단축
- 특수교육 교원 연수과정의 질제고 및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연수과정의 개선 및 다양화 추진

- 특수교육 담당교사의 균형적인 자격연수 기회 제공을 위한 특수교육 회소과목 담당교사의 자격연수 과정 개설

3) 특수교육정보화 사업

- 1997년 교육부·노동부·보건복지부 공동으로 수립된 「장애인 복지 발전 5개년 계획」에 의거 특수교육의 정보화 및 장애인 교육·복지·고용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위해 국립특수교육원에 ‘장애인교육복지정보센터’를 설치하고, 2005년부터 ‘장애인교육복지기반조성’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특수교육 정보화 사업 추진
- 2008년 특수교육 e-learning 지원을 위하여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포털 사이트인 에듀에이블(www.eduable.net)과 장애이해(www.edu.knise.kr), 시각장애학생 학습전문 홈페이지(blind.knise.kr), 인터넷 방송(webtv.knise.kr), 전자도서관(ebooks.knise.kr)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전체적으로 연 683,051명이 접속활용함
- 2009년 6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웹 접근성 지침 준수를 위하여 에듀에이블(www.eduable.net), 장애이해(www.edu.knise.kr), 시각장애학생 학습전문 홈페이지(blind.knise.kr) 재구축 사업을 1차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이트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재구축할 예정임
- 2005년부터 매년 ‘특수교육 현장교사 소프트웨어 공모 사업’을 추진하여 5개 팀씩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8년까지 18개 교과목의 콘텐츠를 개발하여, 그 결과물을 에듀에이블(www.eduable.net)에 탑재하여 보급함
- 2007년부터 시각장애학생의 대학수학능력평가 시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EBS 수능방송 교재 87권을 점역하여 시각장애학생 학습전문 홈페이지(blind.knise.kr)를 통해 서비스를 실시하였고, 2008년에는 교재 91권을 점역하였고, 시각장애학생이 온라인으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각장애학생 온라인 학력평가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였으며, 2009년에는 교재 86권을 점역·보급할 계획임

- 청각·의사소통장애학생의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 유·초등부 저학년용 청능훈련프로그램, 2007년 초등부 고학년용 청능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였고, 2008년에는 영·유아용 언어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에듀에이블(www.eduable.net)을 통해 서비스 하고 있음
- 국립특수교육원 인터넷 방송 시스템을 통해 2006년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우수 수업 동영상, 학예회 동영상 및 국립특수교육원의 세미나 동영상 등을 2009년 8월 현재까지 총 59회를 방송함
- 장애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전자도서를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독서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전자도서관 구축 운영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9년 8월 현재 총 2,403권의 전자도서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함
- 특수교육정보화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2006년 「특수교육 현장의 교육용 콘텐츠 사용실태 조사 연구」, 2007년 「특수교육 현장에서의 ICT활용을 위한 지원모형 개발 연구」, 2008년 「장애학생의 여가활동으로써 게임 활용 실태 및 요구 조사」 연구 등을 수행하였고, 2009년에는 「특수교육 정보화 실태 분석 연구」 및 「시각장애학생 교육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를 추진 중임
- 2007년 장애학생의 직업 전환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발달장애학생 재활작업장 종합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현장적용(한국경진학교)하였고, 2008년부터 중앙행정기관과 전국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연결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원 사이트(support.knise.kr)」를 구축·운영함
- 2003년부터 매년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정보매체 접근 및 활용능력 향상과 특수교육 담당교원들의 정보화 능력 신장을 위한 전국특수교육정보화대회를 개최하였으며, 2008년 대회는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대구광역시에서 개최하였고, 2009년 9월 8일부터 9일까지 개최하는 제7회 전국특수교육정보화대회는 서울에서 개최함

<표 3·90> 2008년도 전국 특수교육 정보화대회 실적

(단위 : 명)

구 분	대 상	기간 및 장소	참가인원
전국 특수학교(급) 학생 정보경진대회	- 특수학교(급) 학생 지도교사	2008 9.9 ~ 9.10 대구 인터볼고호텔	415
전국 장애학생 e스포츠 대회	- 장애학생, 일반학생 학부모, 지도교사		445
전국특수교육정보화세미나	- 특수학교 교원 및 관리자 - 특수학급 교사 -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자		620
특수교육 박람회	- 정보관련 업체 특수교사 양성대학		14개 부스 1,210
고위관리자 초청 장애이해 워크숍	- 국회의원, 시·도교육감, 유관기관장		19
문화행사 (장애체험대회, 공연 등)	- 일반학생 및 교원, 참가학생 및 교사, 학부모, 일반인 등		2,938
특수교육관리자 연찬회	- 특수학교장(감) 시·도교육청 장학관 (사), 특수교사 양성대학 교수 등		185
평가회 및 시상식	- 수상자 주최기관장 및 임직원		121
기 타	- 내빈, 행사운영 및 자문위원, 자원봉 사자 등		270
			6,223

□ 향후 과제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홈페이지 웹 접근성 지침 준수
- 장애학생의 교육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특수교육용 디지털교과서 개발·보급 사업」 추진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요구와 특성에 적합한 학습보조도구 및 보조공학기기 개발·보급